

충청남도 간행물등록번호

6441375-2023-003

2023

충청남도 인권영향평가 보고서



충청남도
Chungcheongnam-do



발간사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일수록 장애인, 이주민, 아동, 청소년 등 인권 약자의 삶은 더욱 피해를 집니다. 이런 때일수록 지자체는 인권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도민의 삶을 둘러보고 시의성 있는 정책을 펼쳐야 합니다.

지자체에서 실시하는 인권영향평가는 도민의 삶과 밀접한 지자체 행정이 도민의 삶에 인권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사전에 점검하는 역할을 합니다.

충청남도는 2019년부터 조례, 규칙을 제·개정할 때 반드시 인권영향평가를 거치도록 하여 2022년까지 371개의 자치법규에 대한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2019년부터 해마다 3개의 시책을 선정해 인권위원과 인권지킴이단, 당사자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시책 인권영향평가단을 운영하여 시책의 인권 책무성 강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인권영향평가는 평가의 대상인 자치법규와 시책을 담당하는 공무원뿐만 아니라 인권영향평가 과정에 참여한 평가단 모두의 인권 의식을 향상시키는 기회가 되어 참여자들의 만족도가 높습니다.

올해 시책 인권영향평가단으로 활동해주신 인권위원님들과
인권지킴이단, 당사자, 전문가들께 감사드리며 시책 인권영향
평가의 처음부터 끝까지 애써주신 인권보호관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또한 시책 담당 부서 공무원들께도 감사드립니다. 관련 자료
제출부터 간담회 참석 등 인권영향평가 기간 동안 협조를 잘해
주셔서 올해도 인권영향평가가 원만히 끝났습니다.

앞으로 자치법규 및 시책 인권영향평가가 이주민과 장애인,
노동자, 농민 등 다양한 사람이 더불어 잘 사는 인권 충남의
마중물이 되도록 더욱 정진하겠습니다.

2023. 12. 18

김 혜 영 충청남도 인권센터장



목차

발간사	2
-----------	---

제1장

충청남도 인권영향평가 개요

1. 인권의 정의	9
2. 인권영향평가의 이해	9
3. 인권영향평가 배경 및 필요성	10
4. 인권영향평가 추진 근거	11
5. 인권영향평가 추진 방법	12
- 자치법규 인권영향평가	12
- 시책 인권영향평가	13

제2장

자치법규 인권영향평가 평가자료 작성 요령

1. 담당부서 자체점검표	17
2. 자치법규 인권영향평가 결과 통보서	20
3. 자치법규 인권영향평가에 대한 부서 의견서	22

제3장

2023년 충청남도 자치법규 인권영향평가 결과

1. 평가개요	27
2. 평가기준	27
3. 추진현황	28
4. 자치법규 인권영향평가 개선권고 분류	32
5. 자치법규 인권영향평가 추진실적(2023)	45

제4장

2023년 충청남도 시책 인권영향평가 결과

1. 평가개요	53
2. 추진경과	53
3. 시책 인권영향평가 결과(지역사회 청소년 안전망 사업 활성화)	56
4. 시책 인권영향평가 결과(저상버스 운수종사자 인식 및 환경 개선) ...	69
5. 시책 인권영향평가 결과(노숙인 지원 정책)	80

참고

1. 2022년 자치법규 인권영향평가 개선권고 결과	93
2. 2022년 시책 인권영향평가 개선권고 내용	98
- 2022년 시책 인권영향평가 추진 세부내역	99
3. 충청남도 인권 기본 조례	101
4. 충남 도민 인권선언문	110

제1장

충청남도 인권영향평가 개요

1. 인권의 정의
2. 인권영향평가의 이해
3. 인권영향평가 배경 및 필요성
4. 인권영향평가 추진 근거
5. 인권영향평가 추진 방법
 - 자치법규 인권영향평가
 - 시책 인권영향평가



2023 충청남도 인권영향평가 보고서

제1장 충청남도 인권영향평가 개요

1

인권의 정의

인권은 존엄성을 가진 인간으로서 누구나 가지는 기본적이고 보편적인 권리를 말한다.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하며 평등한 존재로서 생래적·천부적 인권을 갖는다.

「세계인권선언」 제1조에는 “모든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자유롭고, 존엄과 권리에 있어 평등하다.”라고 되어 있고, 「대한민국 헌법」 제10조에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에는 “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라고 되어 있다.

따라서 인간은 성별, 나이,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종교, 출신 지역, 출신 국가, 인종, 피부색, 언어, 성적지향, 성별 정체성, 가족 형태 또는 가족 상황,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용모 등의 신체조건, 장애, 학력, 병력,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등을 이유로 차별 받지 않고 자유권, 사회권과 같은 기본적 인권을 향유할 권리가 있다.

2

인권영향평가의 이해

가. 자치법규 인권영향평가

자치법규 인권영향평가는 자치법규를 시행함에 있어서 도민의 인권을 침해할만한 요소들을 사전에 분석·평가하는 활동을 말한다. 즉 주거권, 건강권, 교육권, 문화권, 안전권, 환경권, 이동권, 접근권, 노동권, 개인정보 보호권 등의 기본권을 기준으로 인권침해 요소를 점검하고, 자치법규(조례, 규칙 등) 조항 내용이나 용어 등이 기본권보장, 차별 및 인권침해 예방, 도민참여를 기준으로 인권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요소를 제거하는 과정이다.

나. 시책 인권영향평가

시책 인권영향평가는 시책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사업)이나 현안이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개별 특성에 맞는 인권영향평가표를 만들어 해당 분야의 인권이 어떻게 보호되고 실현되는지 점검하여 도 정책을 인권 친화적으로 변화시키는 과정이다.

다. 공공건축물 인권영향평가

공공건축물 인권영향평가는 설계부터 건축에 이르는 모든 과정에 인권 및 건축 등 전문가를 위원으로 구성하여 'BF(barrier-free, 장애물 없는 환경)', 유니버설 디자인(universal design)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인권영향평가를 시행하고 누구나 차별없이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목적이다.

라. 사회복지시설 규정 인권영향평가

사회복지시설 규정 인권영향평가는 충청남도의 지원을 받는 사회복지시설의 규정을 점검하여 직원의 채용이나 휴가 및 복무 관련 사항, 인권침해 구제수단과 이용인의 인권 보호 및 이용 시 차별 방지 등을 점검하여 기본적 인권을 침해받지 않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목적이다.

3

인권영향평가의 배경 및 필요성

우리나라는 인권영향평가가 법률로 제도화 되어 있지 않지만 지자체별로 인권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충청남도는 「충청남도 인권 기본 조례」 제9조(인권영향평가)에 “도지사는 자치법규 및 시책 등이 도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할 때에는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 자치법규, 시책 등 행정 전반에 걸쳐 인권영향평가를 시행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행정은 ‘주민의 복지 증진’에 관한 사무로 인권과 밀접한 연관을 갖고 있어 ‘인권에 기반을 둔 행정’으로 전환해야 한다. 또한 인권증진을 위한 행정을 위해서는 자치법규와 시책 등이 인권 규범을 지키고 있는지 점검하고 인권친화적으로 개선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충청남도 인권 기본 조례」에서는 인권영향평가의 대상을 자치법규와 시책 등으로 규정하고 있고, 인권위원회에서 인권영향평가 결과 도지사에게 정책제도 개선 권고를 할 수 있게 하고 있다. 또한 자치법규 인권영향평가의 경우 「충청남도 법제사무처리규정」에서 도에서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조례나 규칙은 반드시 인권영향평가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조례 및 규칙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부서에서는 도 인권센터에 인권영향평가를 의뢰하여야 한다.

○ 「충청남도 인권 기본 조례」 제9조, 제14조, 제19조

- 제2장 보호 및 증진사업

제9조(인권영향평가) ① 도지사는 자치법규 및 시책 등이 도민의 인권보호 및 증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할 때에는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인권영향평가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례·규칙
2. 도민의 인권증진을 위해 충청남도 인권위원회에서 선정한 시책 등

- 제3장 인권위원회

제14조(설치 등)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4. 인권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 제4장 인권센터

제19조(설치·운영) ② 인권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인권상황에 대한 실태조사 및 인권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 「충청남도 법제사무처리규정」

- 제2장 입법계획 수립 및 입법의견 수렴

제5조(입법안 협의 등) ③ 주관과장은 조례·규칙 입법안을 다음 각 호의 절차를 담당하는 관계 부서의 장에게 보내어 그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성별영향평가 담당부서의 장·부패영향평가 담당부서의 장·인권영향평가 담당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입법예고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그 결과를 주관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충청남도 인권 기본 조례」에 따른 인권영향평가

- 제3장 입법안 심사 등

제8조(제2차 법제심사) ① 주관과장은 제5조 및 제6조의 결과를 반영한 입법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법무담당관의 심사(제2차 법제심사)를 받아야 한다.

7. 인권영향평가 결과통보서

가. 자치법규 인권영향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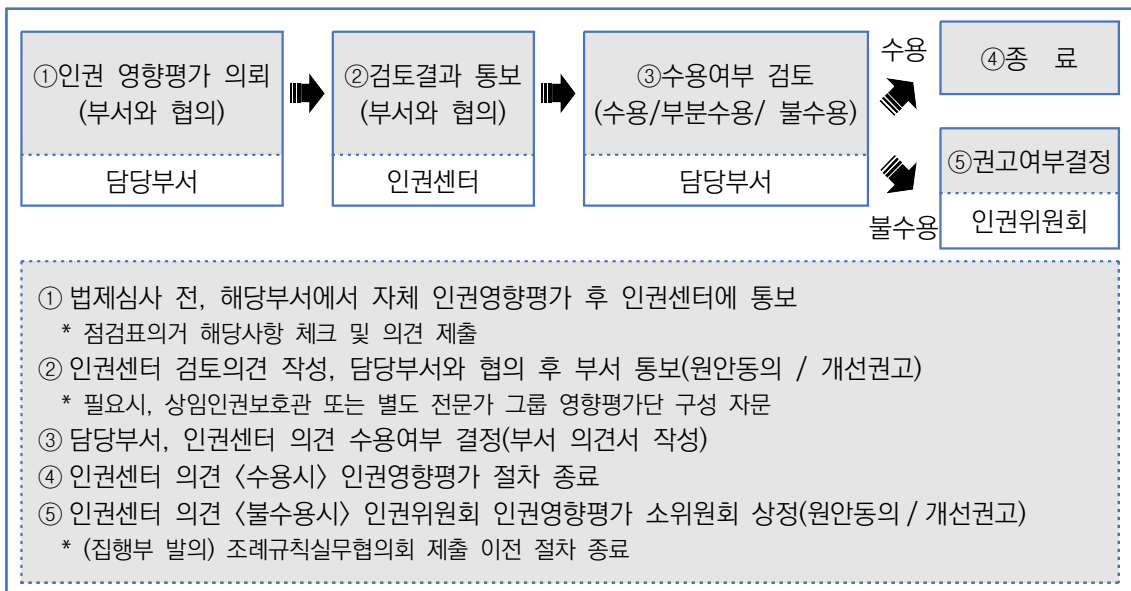
충청남도에서 제·개정을 추진하는 모든 조례와 규칙은 법제심사 전 인권영향평가를 거쳐야 한다. 조례·규칙을 제·개정하는 부서에서는 해당 자치법규에 대해 자체 점검표를 작성하여 도 인권센터에 인권영향평가를 의뢰한다. 도 인권센터는 평가 기준을 중심으로 점검하고, 타 지자체 조례와 비교검토 등의 과정을 거친 후 담당 부서와 협의하여 통지한다.

이때 개선할 사항이 없다면 절차는 종료되고 개선이 필요하다면 개선 권고를 통지하게 된다. 개선 권고를 통지받은 담당 부서는 인권영향평가 결과에 대해 수용 여부(수용, 부분 수용, 불수용) 의견을 도 인권센터에 회신하는데 불수용 시 인권위원회 인권영향평가 소위원회에 상정하여 권고 여부를 재결정한 후 결과를 담당 부서에 통지한다.

» 평가대상 및 시기

- 평가대상 : 제·개정 추진하는 모든 조례·규칙(의원발의 제외)
- 평가시기 : 법제심사 전

» 자치법규 인권영향평가 평가 흐름



나. 시책 인권영향평가

충청남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사업) 중 도민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사회적 약자의 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시책 가운데 도 인권위원회에서 평가가 필요하다고 선정된 시책을 인권영향평가의 대상으로 한다.

평가 대상 선정 후 담당 부서와 시책 인권영향평가의 목적과 방향에 대해 논의하여 상호 협조적인 관계를 만들어 나가려고 노력한다. 이렇게 시책이 선정되면 도 인권센터에서는 각 평가 대상별 시책 인권영향평가단을 6명 이내로 구성한다. 시책 인권영향평가단은 인권위원, 도민인권지킴이단, 당사자, 관련 전문가, 인권보호관으로 구성하고, 평가단은 해당 시책에 대해 인권적 측면을 고려한 객관적 인권영향평가표를 마련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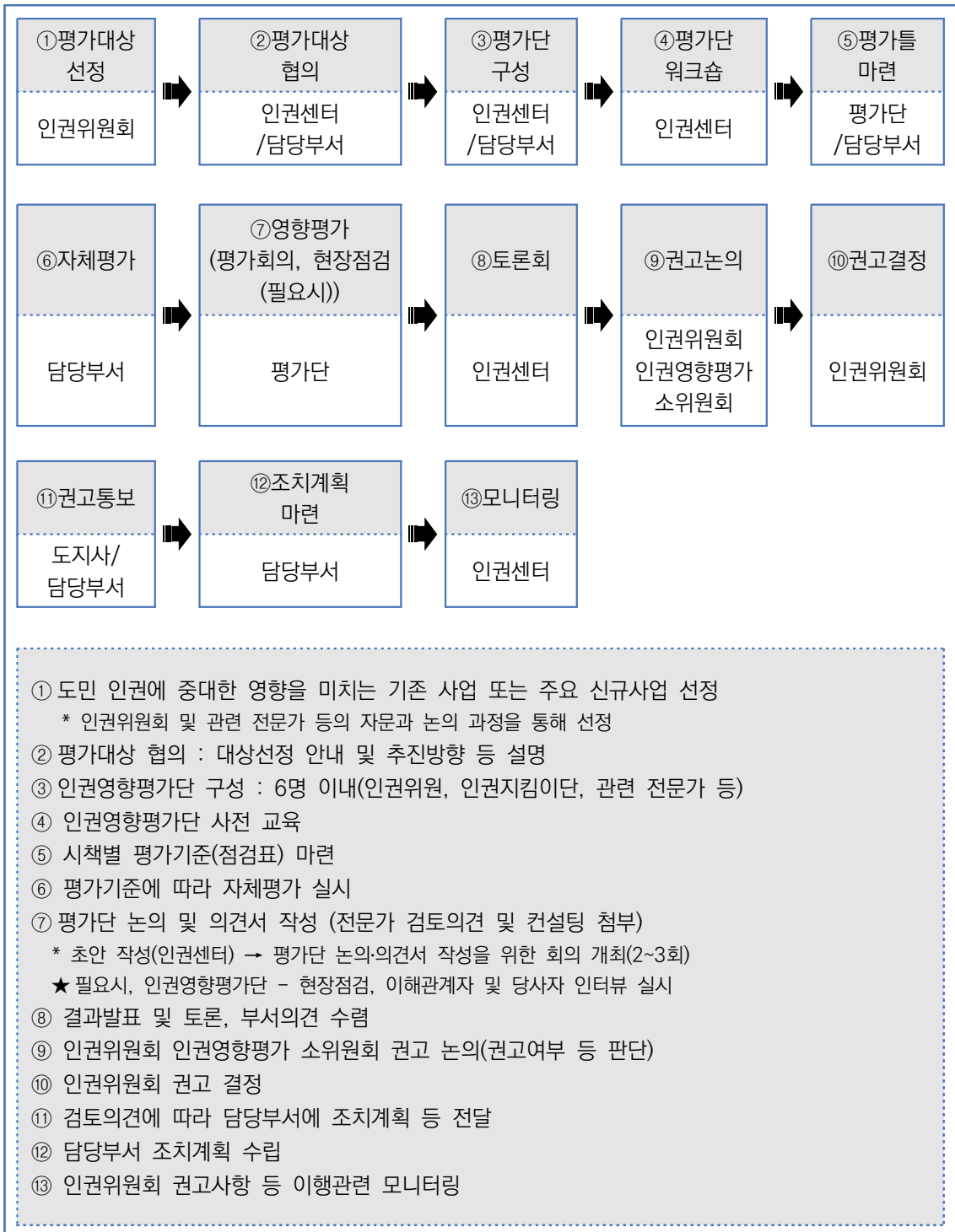
인권영향평가표를 토대로 인권영향평가단 회의를 4~5회 진행하고 평가의견서를 작성하여 인권위원회 인권영향평가 소위원회에 상정한다. 도 인권위원회 인권영향평가 소위원회에서는 평가단의 평가 결과에 따라 권고 여부 등을 검토한 후 도 인권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최종 결정한다.

도 인권센터에서는 도 인권위원회의 결정 사항을 도지사(담당 부서)에게 통보하고 담당 부서에서는 검토의견에 따른 조치계획을 마련하여 의견을 도 인권센터에 제출한다.

» 평가대상

- 평가대상 : 인권위원회에서 선정한 도민 인권 증진시책 등

» 시책 인권영향평가 평가 흐름



제2장

자치법규 인권영향평가 평가자료 작성 요령

1. 담당부서 자체점검표
2. 자치법규 인권영향평가 결과 통보서
3. 자치법규 인권영향평가에 대한
부서 의견서



2023 충청남도 인권영향평가 보고서

제2장 자치법규 인권영향평가 평가자료 작성 요령

1

담당부서 자체점검표

자치법규 인권영향평가는 충청남도에서 제·개정되는 자치법규를 시행하기 전에 도민 인권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활동이다.

자체 점검표 작성을 통해 담당 부서에서는 인권적 관점으로 1차 점검을 하는데 이는 담당 공무원이 자치법규가 도민 인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생각할 수 있게 하여 인권 행정을 끌어내기 위함이 목적이다.

담당 부서에서는 인권영향평가를 의뢰하기에 앞서 인권 규범 및 인권 기본원칙과 충돌하는 지 여부를 참고하여 해당 자치법규에 대한 자체 점검표를 작성해야 한다.

인권영향평가 자체 점검표는 5개 항목, 12개 질문으로 자치법규 내용이나 용어, 문구의 기본권 제약과 인권침해 여부 등을 점검하는데, 법제적인 측면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닌 인권적 가치 측면에서 판단이 이루어져야 한다.

담당 부서에서 자체 점검표를 통해 개선할 내용을 포함하여 도 인권센터로 제출하면 되고, 도 인권센터에서는 자체점검표를 참고하여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한다.

» 자치법규 인권영향평가 담당 부서 자체점검표

조례·규칙명	충청남도 000000000 조례(규칙)				
구 분	☐ 제정 ☐ 개정				
관련법령	00법을 제00조,				
입법일정 (예정)	입법예고	20	-	-	~ 20 - - (일간)
	법제심사	20	-	-	~ 20 - - (기간중 예정)
붙임자료	필수자료	조례·규칙안 및 방침자료, 점검표, 관련규정(고시,훈령,지침 등)			
	기타자료				

※ 해당사항에 ○로 표시해 주십시오.

구 분	질 문	응 답	자체개선 (예로 체크한 경우)
기본권 제약	관련조항이 국내외 인권규범 및 인권기본원칙과 충돌할 우려가 있는가?	① 예 ② 아니오 ③ 모르겠음	*제개정안 : *수정안:
	도민들의 기본적 인권을 제한하거나 침해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가?	① 예 ② 아니오 ③ 모르겠음	*제개정안 : *수정안:
	도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이 있는 경우 상위법 등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고 있는가?	① 예 ② 아니오 ③ 모르겠음	*제개정안 : *수정안:
	관련조항의 표현과 내용이 전반적으로 일반 시민의 수준에서 누구나 쉽게 이해되고 알 수 있는 문구인가?	① 예 ② 아니오 ③ 모르겠음	*제개정안 : *수정안:
인권 침해	관련조항으로 사회적 소수자/약자에게 어떤 침해(사실상의 침해를 포함)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가?	① 예 ② 아니오 ③ 모르겠음	*제개정안 : *수정안:
	관련조항에 인권침해를 유발할 수 있는 재량규정이 포함되어 있는가?	① 예 ② 아니오 ③ 모르겠음	*제개정안 : *수정안:
	관련조항에서 특정인이나 집단에 대한 고정관념이나 차별적 인식이 반영된 표현이나 내용이 사용되고 있는가?	① 예 ② 아니오 ③ 모르겠음	*제개정안 : *수정안:
구제 수단	관련조항에 사회적 약자의 다양성과 차이를 고려하고 이를 반영하고 있는가?	① 예 ② 아니오 ③ 해당없음	*제개정안 : *수정안:
	관련조항으로 침해를 받을 경우 이와 관련한 개인이나 집단의 절차적 권리가 보장되어 있는가?	① 예 ② 아니오 ③ 해당없음	*제개정안 : *수정안:
공개	제·개정 과정에서 관련 정보가 도민들과 이해관계자들에게 적법하고 절차에 맞게 공개 및 제공되었는가?	① 예 ② 아니오 ③ 해당없음	*제개정안 : *수정안:
참여	제·개정 과정에서 도민들과 이해관계자들의 참여가 적법하고 절차에 맞게 보장되었는가?	① 예 ② 아니오 ③ 해당없음	*제개정안 : *수정안:
	위원회 등 구성에 있어서 사회적 약자 등 다양성과 차이를 고려할 것을 명시하고 있는가?	① 예 ② 아니오 ③ 해당없음	*제개정안 : *수정안:

작성자	부서명	직위(급)	성 명	전화번호

» 자치법규 인권영향평가 자체점검표 작성 참조사항

구 분	검 토 내 용	
기본권 제약	인권규범 및 인권기본원칙과 충돌하는지 여부 검토 - 세계인권 선언 등 고려(http://edu.humanrights.go.kr/academy/eduinfo/worldHnrtList.do)	
	기본적 인권의 제한 또는 침해 요소가 있는지 여부 검토	
	인권분야	세 부 내 용
	민주적 참여권	행정정보에 대해 알 권리 도에 설명을 요구하고,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할 권리
	주거권	건강하고, 안전하며, 안정적이고 쾌적한 주거에서 생활할 권리 적절한 대책없는 강제퇴거 금지
	교육권	교육에 적합한 시설과 환경에서 생애주기별 적절한 교육을 받을 권리 차별받지 않고 교육받을 권리
	건강권	질병에 대한 적절한 치료를 받을 권리 질병이나 병력으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 안전하게 먹을 권리 감염병 환자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보건의료 제공
	문화권	공공시설에 쉽게 접근하여 자유롭게 이용할 권리 다양한 문화활동에 참여하여 표현, 창작할 권리
	안전권	재난 및 사고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안전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보행 및 교통에서 안전할 권리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폭력에서 보호받을 권리
	환경권	쾌적한 환경에서 살 권리 공해, 소음 등에서 보호받을 권리
	이동권 접근권	자기 의사에 따라 이동할 권리 공공 시설이나 행사에서 장애나 신체의 불편 여부와 관계없이 접근하여 이용할 권리
	노동권	차별없이 공정하고 안전한 작업환경에서 노동할 권리 실업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개인정보 보호권	개인정보의 보호(사적정보 처리의 자기결정권) 사생활이 보호받을 권리
	도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지나치게 어려운 용어나 난해한 표현을 사용하여 일반도민의 수준에서 이해하기 어렵게 하거나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한 추상적인 내용이 포함되어있는지를 확인 - 불허가 기준으로 '공익', 제한요건으로 '공공의 안전' 등	

구 분	검 토 내 용
인권 침해	인권약자에 대한 인권침해 및 차별요소가 있는지 검토 - 어린이, 청소년, 여성, 비혼모, 장애인, 노인, 이주민, 북한이탈주민, 병력이 있는 사람, 비정규노동자, 생활보호대상자, 전과자 등
	‘정상인, 정신병자 등’인권침해적 용어나, 특정집단에 대한 고정관념들이 반영된 내용이 있는지 검토
구제 수단	사회적 약자의 다양성과 차이를 고려하여 반영하였는지 여부 - 여성장애인의 임신, 출산에 따른 활동지원급여 추가 지급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사회적 약자의 현실과 요구를 파악하고, 반영하였는지 여부 - 인권통계 및 인권실태조사 실시 및 활용
	제·개정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권리침해 요소를 해소할 수 있는 수단이 보장되어 있는지 여부 - 이의신청 절차 마련
공개	관련 정보가 이해관계자 및 시민 등에게 충분히 공개되었는지 여부
	이해관계자 및 시민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였는지 여부
참여	위원회 등 구성에 있어서 사회적 약자의 비율을 고려하였는지 여부 위촉직은 한 쪽 성이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구성
	위원회 등 구성에 있어서 특정사람이나 특정집단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는지 여부

2

자치법규 인권영향평가 결과 통보서

자치법규 인권영향평가 결과 통보서 작성은 담당 부서의 자체 평가표를 검토하고, 인권의 제한 또는 침해 요소가 있는 지 여부 등을 판단한 후 타 지자체 조례와의 교차 검토 등의 절차를 진행한 후 작성된다.

도 인권센터에서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시 개선 권고 결과 통보서를 작성하고, 담당 부서와 관련 내용에 대해 협의하여 평가를 진행한다.

자치법규 인권영향평가 권고는 ‘조문 내용수정’, ‘용어 수정’, ‘조항 수정’, ‘부적절한 표현 삭제’ 등을 개선 권고 사유와 함께 통보하게 된다.

» 자치법규 인권영향평가 결과 통보서

자치법규 인권영향평가 결과 통보서			
자치법규명	충청남도 ○○○○○○○○○ 조례(규칙) 제(개)정안		
입안주무부서	○○○○과	결과 통보일	202○. . .
해당조항	인권영향평가 결과		
제○조(자원순환 성과관리) 도지사는 법 제○조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원순환 목표를 설정하고 그 달성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폐기물 발생량 대비 폐기물 최종처분량의 비율인 최종처분율 2. 폐기물 발생량 대비 폐기물 순환이용량의 비율인 순환이용률 (예시)	[권고내용] 조항추가 권고 제○조(자원순환 성과관리)에 명시된 각호의 ‘폐기물에 관한 적용대상’ 조항추가 (예시) [개선권고 사유] - 환경부 지침 「시·도 자원순환 성과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 제 3조(적용대상 폐기물)에 따르면, 최근 3년간의 연평균 배출량을 기준으로 폐기물을 1천 톤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을 명시하고 있음 - 타 광역지자체(○○○○도, ○○○도, ○○도) 자원순환 기본조례에 서도 환경부 지침에 따라 폐기물 배출량이 많은 사업장을 집중 관리하는 조문이 추가되어있음 - 따라서 제○조(자원순환 성과관리) 제○항에 대한 적용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헌법」 제35조에서 규정하는 환경권을 실질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폐기물에 관한 적용대상 조항’을 추가할 것을 권고함 (예시)		

작성 자	부 서 명	직 위	성 명	전화번호
	충청남도인권센터			

자치법규 인권영향평가 결과 통보서는 인권영향평가의 기준 등을 통해 점검하고 사전 협의를 하여 통지하기 때문에 인권센터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여 작성한다.

이에 따라 담당 부서에서는 수용, 부분수용, 불수용에 대한 여부를 검토하고 부분수용, 불수용 시 그 사유를 합리적으로 의견 제시하여 도 인권센터로 제출하여야 한다.

불수용 시 인권위원회 인권영향평가 소위원회에 상정하여 권고 여부를 논의하고 원안 동의 혹은 재(再) 개선 권고를 하게 된다.

» 자치법규 인권영향평가 부서의견서

자치법규 인권영향평가 결과 통보에 대한 부서의견서				
자치법규명	충청남도 ○○○○○○○○○ 조례(규칙) 제(개)정안			
해당조항	인권영향평가 결과	수용 여부	부분수용 및 불수용 시 부서의견	
제○조(자원순환 성과관리) 도지사는 법 제○조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원순환 목표를 설정하고 그 달성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폐기물 발생량 대비 폐 기물 최종처분량의 비율 인 최종처분율 2. 폐기물 발생량 대비 폐 기물 순환이용량의 비율 인 순환이용률 (예시)	[권고내용] 조항추가 권고 제○조(자원순환 성과관리)에 명 시된 각호의 ‘폐기물에 관한 적 용대상’ 조항추가 (예시) [개선권고 사유] - 환경부 지침 「시·도 자원순환 성과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 침」 제3조(적용대상 폐기물)에 따르면, 최근 3년간의 연평균 배출량을 기준으로 폐기물을 1천 톤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을 명시하고 있음 - 타 광역지자체(○○○도, ○○ ○도, ○○도) 자원순환 기본 조례에서도 환경부 지침에 따라 폐기물 배출량이 많은 사업장 을 집중 관리하는 조문이 추가 되어있음 - 따라서 제○조(자원순환 성과 관리) 제○항에 대한 적용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헌법」 제35조에서 규정하는 환경권을 실질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폐기물에 관한 적용대상 조항’ 을 추가할 것을 권고함 (예시)	■ 수용 ☐ 부분수용 ☐ 불수용		

작 성 자	부 서 명	직 위	성 명	전화번호

제3장

2023년 충청남도 자치법규 인권영향평가 결과

1. 평가개요
2. 평가기준
3. 추진현황
4. 자치법규 인권영향평가 개선권고 분류
5. 자치법규 인권영향평가 추진실적(2023)



2023 충청남도 인권영향평가 보고서

제3장 2023년 충청남도 자치법규 인권영향평가 결과

1

평가개요

- 평가대상 : 제·개정 추진하는 모든 조례·규칙(의원 발의 제외)
- 평가시기 : 법제심사 전
- 평가내용 : 자치법규 제·개정 시 도민에게 미칠 인권침해와 차별가능성 등 분석 평가

2

평가기준

평가분야	평가항목
기본권 제약	관련 조항이 국내외 인권 규범 및 인권 기본원칙과 충돌할 우려가 있는가?
	도민들의 기본적 인권을 제한하거나 침해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가?
	도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이 있는 경우 상위법 등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고 있는가?
	관련 조항의 표현과 내용이 전반적으로 일반 시민의 수준에서 누구나 쉽게 이해되고 알 수 있는 문구인가?
인권 침해	관련 조항으로 사회적 소수자/약자에게 어떤 침해 (사실상의 침해를 포함)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가?
	관련 조항에 인권침해를 유발할 수 있는 재량규정이 포함되어 있는가?
	관련 조항에서 특정인이나 집단에 대한 고정관념이나 차별적 인식이 반영된 표현이나 내용이 사용되고 있는가?
구제 수단	관련 조항에 사회적 약자의 다양성과 차이를 고려하고 이를 반영하고 있는가?
	관련 조항으로 침해를 받을 경우 이와 관련한 개인이나 집단의 절차적 권리가 보장되어 있는가?
공개	제·개정 과정에서 관련 정보가 도민들과 이해관계자들에게 적법하고 절차에 맞게 공개 및 제공되었는가?
참여	제·개정 과정에서 도민들과 이해관계자들의 참여가 적법하고 절차에 맞게 보장되었는가?
	위원회 등 구성에 있어서 사회적 약자 등 다양성과 차이를 고려할 것을 명시하고 있는가?

가. 인권영향평가 실시 현황

2023년 자치법규 제·개정을 추진하는 부서에서 의뢰한 110개의 조례나 규칙 등에 대해서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했다. 이 중 조례는 61개, 규칙은 30개, 규정은 17개, 지침은 2개였으며 제·개정 여부는 제정이 14개, 개정(폐지포함)이 96개였다.

» 자치법규 인권영향평가 대상 분류(2023)

	계	제정	개정
조례	61	8	53
규칙	30	5	25
규정	17	1	16
지침	2	-	2
계	110	14	96

나. 개선권고에 대한 수용 여부

평가 결과 개선 권고된 18개 자치법규에 대해 결과 통보 후 부서 의견을 회신한 결과 「충청남도 문화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과 「충청남도 경제위기대응시스템 구축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해서는 불수용 하였고, 나머지 16개 권고 사안에 대해서는 모두 수용하였다.

» 자치법규 인권영향평가 개선권고 수용 여부(2023)

심의건수	원안동의	개선권고					
		소계	수용	부분수용	불수용	진행중	기타
110	92	18	16	-	2	-	-

» 자치법규별 개선권고 내용 및 조치결과(2023)

연번	조례명	주요내용	조치결과
1	충청남도 충남연구원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5조(기금) 제2항 제2호에 포함된 “양여”를 “무상양도”로 용어 수정	수용
2	충청남도 문화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제7조(이사회) 제2항에 ‘특정 성별이 위촉직 이사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한다’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조항으로 문구 추가	불수용
3	충청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안	- 제9조(위원의 해촉) 에 ‘심신장애’를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수정 - 제9조(위원의 해촉) 제3호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재량권 남용의 우려가 있으므로 삭제 권고	수용
4	충청남도 통합방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3조(통합방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제1항에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한다’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조항으로 문구 추가	수용
5	충청남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7조(위원회의 구성) 제6항에 “위원장을 보좌하며” 문구를 삭제 - 제10조(위원의 해임 및 해촉) 제4호에 위원 해임 및 해촉 사유로 명시된 “직무태만”과 “품위손상”에 대해 명확한 내용으로 수정 - 제10조(위원의 해임 및 해촉) 제5호에 “심신장애”를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수정	수용
6	충청남도 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별지 제2호 서식] 공연(전시·행사)계획서 개요 중 “인터미션”을 “중간휴식시간” 혹은 “휴식 시간” 등의 우리말 표현으로 수정	수용
7	충청남도 인구정책 및 인구감소 지역 지원안 제정조례안	- 제6조(위원회의 구성)에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한다’라는 내용을 포함한 조항 추가	수용
8	충청남도 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 일부개정안	- 제3조(정의)에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의 정의 조항 추가	수용
9	충청남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안	- 제5조(구성) 제1항 또는 제3항에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한다’라는 내용을 포함한 조항 추가	수용

연번	조례명	주요내용	조치결과
10	충청남도 자치경찰 우리마을 안심 지킴이 운영 조례 제정안	- 제5조(해촉) 제2호에 “활동이 부진하거나” 문구 삭제 권고	수용
11	충청남도 자치경찰 우리마을 안심 지킴이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	- [별지 제5호 서식] 신분증명서 제작 내용 중 “주소”를 “거주지역”으로 수정하고, 위촉기간 이후 오남용 방지를 위해 “위촉기간” 명시를 권고함	수용
12	충청남도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및 관리 지침 일부개정예규안	- 제6조(체육지도자 및 선수의 채용) 제3호에 성범죄경력조회서 제출 조항 추가 - 제11조(의료비 보상)에 ‘훈련이나 경기 중의 부상’을 ‘훈련이나 경기로 인한 부상 등’으로 수정 - 제15조(해임) 제4호에 지도자 및 선수가 정당한 사유를 설명할 수 있는 경우는 해임 사유로 예외 할 수 있도록 수정 권고 - 제15조(해임) 제8호에 체육지도자의 실적 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여 해임 사유를 객관적 기준에 의해 판단할 수 있도록 내용 수정	수용
13	충청남도 경제위기대응시스템 구축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 제12조(경제상황점검회의의 구성) 제3항 제3호 및 제4호에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한다’라는 내용을 포함한 조항 추가	불수용
14	충청남도 식생활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5조(구성) 제3항에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한다’라는 내용을 포함한 조항 추가	수용
15	충남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안	- 제11조(구성) 제3항 제6호에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한다’라는 내용을 포함한 조항으로 수정 - 제14조(위원의 해촉) 제1항 제1호에 “심신장애”를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수정 - 제14조(위원의 해촉) 제1항 제3호에 위원 해임 및 해촉 사유로 명시된 “직무태만”과 “품위손상”에 대해 명확한 내용으로 수정	수용

연번	조례명	주요내용	조치결과
16	충청남도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	- 제5조(이의신청)는 7일의 이의신청 기간을 연장할 것을 권고	수용
17	충청남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36조(임기) 제1호에 “심신장애”를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수정 - 제36조(임기) 제2호에 위원 해임 및 해촉 사유로 명시된 “품위손상”에 대해 명확한 내용으로 수정	수용
18	충청남도 비공무원 공정채용 규정 제정안	- 제8조(채용원칙) 제1항에 성별, 신체조건, 학력 외에 ‘연령’을 추가하고, 신체조건은 ‘용모 등 신체조건’으로 변경 - 제10조(채용절차 등) 제1항 제3호의 괄호 내용을 ‘체력검정 포함’으로 변경, 제2항에 성별, 연령 외에 ‘장애’를 추가 - 제16조 제2항과 제24조 제2항의 “징구”라는 용어는 쉬운 용어로 변경할 것을 권고함	수용

자치법규 인권영향평가 개선권고 분류

평가 결과 개선 권고된 18개 자치법규의 24건의 권고내용을 살펴보면, 기본권 제약 분야에서 정의 및 내용 추가 5건, 개인정보보호 1건, 인권침해 분야에서 차별적 용어 사용 등 10건이었고, 특정 성별 편중 방지 5건, 구제수단 분야 4건이었다.

» 자치법규 인권영향평가 개선권고 분류(인권분야별)

분 야		내 용	비 고
기본권 제약	가. 도민의 알권리 보장 - 정의 및 내용 추가·수정 - 용어수정	1.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정의 조항 추가	
		2. 성범죄경력조회서 제출 조항 추가	
		3. 채용 절차에 '체력검정 포함', 평가기준 유형에 '장애'추가	
		4. '징구'를 쉬운 용어로 수정	
		5. 해촉사유의 '활동이 부진하거나' 문구 삭제	
		6. 재량권 남용의 우려가 있는 표현(직무태만, 품위 손상) 삭제	3건
		7. 우리말 표현 수정	
	나. 개인정보 보호	1. 제안·제보 당사자의 개인정보 동의 후 정보 이용 가능으로 수정	
인권 침해	가. 차별적 용어 사용	1. '심신장애'를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수정	3건
		2. '보좌' 용어 삭제	
		3. 채용원칙에 '연령'추가, 신체조건을 '용모 및 신체 조건'으로 수정	
	나. 특정 성별 편중 방지	1. 성비 균형을 고려한 위원회 구성	5건
구제 수단	가. 구제수단	1. 의료비 보상 관련 범위 확대	
		2. 이의신청 기간 연장	
		3. 정당한 사유의 경우 해임 예외사유로 규정 수정	
		4. 실적 기준 구체적 마련으로 객관적 해임 사유 마련	

기본권 제약

가. 도민의 알권리 보장(정의 및 내용추가, 용어수정)

도민의 알권리 보장과 자의적 해석 방지를 위해 용어 정의 추가, 조문 내용 및 용어 수정 등을 권고했다.

1)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 정의 조항 추가

해당조항	권고내용
〈충청남도 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 일부개정안〉	
제3조(정의) 1~4호 생략	- 제3조(정의) 에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의 정의 조항 추가

- 자치법규는 도민의 접근성과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누구나 쉽게 알 수 있게 하여 도민의 알권리를 지켜야 하고, 제·개정을 함에 있어서 그 의미와 내용이 명확해야 행위에 대해 누구나 이해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남용을 방지할 수 있음
- 「충청남도 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 일부개정안」을 살펴보면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용어가 여러 번 사용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정의가 없어 이해하기 어려움
-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용어를 정의에 추가하여 도민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함

2) 성범죄경력조회서 제출 조항 추가

해당조항	권고내용
〈충청남도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및 관리 지침 일부개정예규안〉	
제6조(체육지도자 및 선수의 채용) ③ 체육지도자 및 선수로 지원하려는 자는 도지사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11호 생략	- 제6조(체육지도자 및 선수의 채용) 제3호에 성범죄경력조회서 제출 조항 추가

- 「국민체육진흥법」제11조의5(체육지도자의 결격사유) 제4호에 따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지도자로서의 결격사유로 규정되어있음

- 아울러 스포츠인권센터에서는 인권침해, 성희롱, 성추행 등을 다루고 있고 피해가 인정된다면 징계까지 이뤄지고 있음
- 상위법에 따른 성범죄의 경우 일정 기간동안 선수 활동을 제한하는 조치가 필요함
- 선수의 성범죄에 관한 법 규정은 없으나, 재발과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체육지도자와 선수의 채용 시 성범죄경력조회서를 제출하는 조항을 추가할 것을 권고함

3) 채용절차에 '체력검정 포함', 평가기준 유형에 '장애' 추가

해당조항	권고내용
〈충청남도 비공무원 공정채용 규정 제정안〉	
제10조(채용절차 등) ① 채용권자는 공무원 등의 채용 시 채용계획 수립 및 채용공고 후 다음 각 호의 전형방식에 따라 채용하되, 제1호와 제4호는 반드시 거쳐야 한다. 1. 서류전형 2. 필기시험(직무적성검사) 3. 실기시험(체력검정) 4. 면접전형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체력검정의 경우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한 합리적 평가 기준을 마련하여야 하며, 「국민체력100 인증제도」를 활용하여 체력검정을 대체할 수 있다.	- 제10조(채용절차 등) 제1항 제3호의 괄호 내용을 '체력검정 포함'으로 변경, 제2항에 성별, 연령 외에 '장애'를 추가

- 실기시험의 직종에 따라 다양하게 구성되어야 하는데 제10조 제1항 제3호는 실기 시험은 곧 체력검정이라고 표기하고 있음
- 또한 장애인의 경우 비장애인과 동일한 체력검정 기준을 적용하면 차별이 되므로 다른 기준이 필요함
- 따라서 실기시험이 곧 체력검정이라는 표기는 수정되어야 하며, 체력검정의 경우 다른 사유와 마찬가지로 장애를 고려한 기준이 마련되어야 함

4) ‘징구’를 쉬운 용어로 수정

해당조항	권고내용
〈충청남도 비공무원 공정채용 규정 제정안〉	
제16조(심사위원의 제척·기파·회피) ② 채용권자는 심사위원에게 회피의무를 안내하고 별지 제5호 서약서를 징구하여야 하며, 심사위원은 스스로 제1항 각 호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별지 제6호 회피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16조(심사위원의 제척·기파·회피) 제2항과 제24조(채용결격사유) 제2항의 “징구”라는 용어는 쉬운 용어로 변경할 것을 권고함
제24조(채용결격사유) ② 채용권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라 신규 채용시 채용후보자가 비위 면직자 등에 해당되는지 별지 제7호를 징구하고, 확인해야 한다.	

- 각종 법 및 규정은 모든 사람이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표기되어야 모든 사람의 법 및 규정에 대한정보 접근권을 보장할 수 있음
- 규정에 있는 “징구”라는 용어는 잘 쓰이지 않고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려우므로 쉬운 용어로 변경되어야 함

5) 해촉사유의 ‘활동이 부진하거나’ 문구 삭제

해당조항	권고내용
〈충청남도 자치경찰 우리마을 안심지킴이 운영 조례 제정안〉	
제5조(해촉)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안심지킴이를 해촉할 수 있다. 2. 안심지킴이로서 활동이 부진하거나 허위 제언·제보 등으로 품위를 현저히 손상한 경우	- 제5조(해촉) 제2호에 “활동이 부진하거나”문구 삭제 권고

- 위촉기간은 3년으로 명시되어 있으므로 위촉임기를 보장하여야 하며, 안심지킴이는 조례 제8조(제보대상)에 따라 제언·제보를 하게 되는데 지역별 제보 편차가 발생할 수 있고, 제보가 없다고 하더라도 태만했다고 볼수도 없음
- 이는 활발하게 활동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나오지 않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므로 객관적이고 정량적인 수치로 활동부진을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음

- 따라서 제5조(해촉) 제2호에 명시된 “활동이 부진하거나”를 삭제하여 불합리한 해촉을 방지할 수 있도록 수정할 것을 권고함

6) 재량권 남용의 우려가 있는 표현(직무태만, 품위손상) 삭제

해당조항	권고내용
〈충청남도사회서비스원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9조(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9조(위원의 해촉) 제3호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재량권 남용의 우려가 있으므로 삭제 권고
〈충청남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안〉	
제36조(임기) 단장, 부단장과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도지사가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2.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36조(임기) 위원 해임 및 해촉 사유로 명시된 “품위손상”에 대해 명확한 내용으로 수정
〈충청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규칙안〉	
제14조(위원의 해촉) ①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14조(위원의 해촉) 제1항 제3호에 위원 해임 및 해촉 사유로 명시된 “직무태만”과 “품위손상”에 대해 명확한 내용으로 수정

- 직무태만과 품위손상은 객관적 가치로 판단할 수 없는 단어로서 위원의 해촉 권한이 있는 도지사의 재량권 남용 우려가 있음
- 위원의 일신상 사유나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스스로 사임 의사를 밝힌 경우 등을 제외한 경우는 인사위원회에서 다루어야 함. 따라서 ‘직무태만’, ‘품위손상’이 포함된 조항을 삭제 권고함

7) 우리말 표현 수정

해당조항	권고내용
〈충청남도 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별지 제2호 서식] 공연(전시·행사)계획서(제2조제1항 관련) * 인터미션	- [별지 제2호 서식] 공연(전시·행사)계획서 개요 중 “인터미션”을 “중간휴식시간” 혹은 “휴식시간” 등의 우리말 표현으로 수정

- 자치법규는 일반 도민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하여 도민의 정보접근권 및 알권리를 지켜야 함
- 해당 시행규칙의 서식의 개요 중 “인터미션”은 도민의 관점에서 누구나 이해하기 어려운 단어라고 판단되어 체할만한 표현으로 ‘중간휴식시간’ 혹은 ‘휴식시간’ 등이 있기 때문에 해당 표현 등 우리말 표현으로 바꾸어 도민의 정보접근권 및 알권리를 보장할 것을 권고함

기본권 제약

나. 개인정보 보호

도민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조항을 추가 및 수정 권고했다.

1) 제안·제보 당사자의 개인정보 동의 후 정보 이용 가능으로 수정

해당조항	권고내용
〈충청남도 자치경찰 우리마을 안심지킴이 운영 조례 제정안〉	
제12조(정보보호) 안심지킴이의 제안·제보사항을 처리하는 자는 제안·제보자의 개인정보에 관하여 누설하거나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열거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미담·수범 사례 및 정책의 제안 2. 개인·단체·행정기관의 사기를 높일 수 있는 내용의 제안 3. 기타 공익을 위하여 공개가 필요하거나 제안·제보자가 공개를 요구한 경우	- 제12조(정보보호) 제1호~제3호에 대하여는 “제안·제보자의 동의를 얻어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단서에 추가할 것을 권고

- 안심지킴이의 제안·제보 사항을 처리하는 자가 제안·제보자의 정보에 관해 누설하지 않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제3조에 의해 보호받아야 마땅함
- 또한 보호의 사항이 미담·수범사례, 개인·단체·행정기관의 사기를 높일 수 있는 내용의 제안 등의 긍정적 내용이라고 하더라도 제안·제보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 공개할 수 있도록 해야함
- 따라서 제12조(정보보호)에 제안·제보자의 제안·제보 등의 정보를 이용 시 개인 정보에 대한 동의를 얻는 내용으로 조문을 수정할 것을 권고

인권침해

가. 차별적 용어 사용

‘심신장애’, 해촉사유 ‘활동이 부진하거나’, 직무태만 및 품위손상, 보좌, 채용원칙 등의 차별적 용어 사용으로 인권침해가 우려되는 용어에 대해 개선을 권고했다.

1) ‘심신장애’를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수정

해당조항	권고내용
〈충청남도사회서비스원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9조(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제9조(위원의 해촉) ‘심신장애’를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수정
〈충남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안〉	
제14조(위원의 해촉) ①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제14조(위원의 해촉) 제1항 제1호에 “심신장애”를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수정
〈충청남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안〉	
제36조(임기) 단장, 부단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도지사가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 제36조(임기) 제1호에 “심신장애”를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수정

-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이유는 다양하나 자칫 장애를 가진 사람만 해촉할 수 있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으며, 장애 유무가 직무수행과 관련 있다는 인식을 심어 주어 장애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부추길 수 있음
- 아울러 1989년 장애에 대한 인식 변화와 함께 「심신장애자복지법」이 「장애인복지법」으로 개정되며 ‘심신장애’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있음
- 이에, ‘사고나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게 된 경우’로 수정하여 차별적 요소를 제거하고 직무수행 여부를 폭넓게 해석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수정할 것을 권고함

2) ‘보좌’ 용어 삭제

해당조항	권고내용
〈충청남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⑥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위원회의 구성) 제6항에 “위원장을 보좌하며” 문구를 삭제

- 보좌(輔佐)는 ‘상관을 도와 일을 처리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보필(輔弼)은 ‘윗사람의 일을 도움’이라는 뜻으로 서로 비슷한 뜻을 가지고 있음
-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충청남도의 지속가능발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구성된 위원으로서 서로 협력하는 평등한 관계이기 때문에 ‘보좌’라는 표현은 위원회 등의 취지에 맞지 않음
- 또한,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부위원장이 대리하는 것만으로도 도움이나 협력의 의미를 가질 수 있음
- 따라서 ‘위원장을 보좌하며’, ‘단장을 보좌하며’를 삭제할 것을 권고함

3) 채용원칙에 ‘연령’ 추가, 신체조건을 ‘용모 및 신체조건’으로 수정

해당조항	권고내용
〈충청남도 비공무원 공정채용 규정 제정안〉	
제8조(채용 원칙) ① 공무원 등의 채용은 공개경쟁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성별, 신체조건, 학력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제한을 두어서는 안 된다.	- 제8조(채용원칙) 제1항에 성별, 신체조건, 학력 외에 ‘연령’을 추가하고, 신체조건은 ‘용모 등 신체조건’으로 변경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모집과 채용) 제2항에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채용할 때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용모·키·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미혼 조건,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조건을 제시하거나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정의) 제3호에“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란 합리적인 이유 없이 … 나이, 용모 등 신체 조건 … 등을 이유로 … 고용(모집, 채용 …)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음
- 이는 법률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기업에서 다른 사유와 마찬가지로 용모 등 신체조건이나 연령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그에 따른 채용 차별을 제한하고 있는 것이므로 도가 채용하는 비공무원 채용 규정에도 관련 내용을 추가할 것을 권고함.

인권침해

나. 특정 성별 편중 방지

특정 성별 편중을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비율이 명시되지 않아 비율 명시를 개선권고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결정 과정에 특정 성별이 배제되어 차별받는 것을 방지할 것을 권고했다.

1) 성비 균형을 고려한 위원회 구성

해당조항	권고내용
〈충청남도 문화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7조(이사회) ① 재단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②~③항 생략	- 제7조(이사회) 제2항에 '특정 성별이 위촉직 이사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한다'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조항으로 문구 추가
〈충청남도 인구정책 및 인구감소지역 지원안 제정조례안〉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⑤항 생략	- 제6조(위원회의 구성) 에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한다'라는 내용을 포함한 조항 추가
〈충청남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안〉	
제5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 제5조(구성) 제1항 또는 제3항에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한다'라는 내용을 포함한 조항 추가
〈충청남도 경제위기대응시스템 구축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제12조(경제상황점검회의의 구성)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3. 도내 경제관련 기관·단체의 대표 4. 그 밖에 지역경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전문가	- 제12조(경제상황점검회의의 구성) 제3항 제3호 및 제4호에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한다'라는 내용을 포함한 조항 추가
〈충청남도 식생활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조(구성)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충청남도의회에서 추천한 도의원 1명 2. 식생활교육 및 식품관련 기관·단체 대표 또는 관련 전문가 3. 농어업인 및 소비자관련 기관·단체 대표 4. 식생활교육관련 기관의 소속 공무원 5. 식생활 교육 등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대학교수, 전문가, 도민	- 제5조(구성) 제3항에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한다'라는 내용을 포함한 조항 추가

-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 제4항에 따르면, ‘위촉직 위원을 구성할 때는 어느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로 규정하고 있음
- 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결정 과정에 특정 성별이 배제되어 차별받는 것을 방지하고 평등한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적극적 조치임
- 따라서 위원회 구성에 있어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 편중을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 규정으로 수정할 것을 권고함

구제수단

다. 구제수단

직장운동경기부의 부상 시 받을 수 있는 의료비 보상 관련 범위 확대, 이의신청 기간 연장, 해임 사유 수정 등에 대해 권고했다.

1) 의료비 보상 관련 범위 확대

해당조항	권고내용
〈충청남도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및 관리 지침 일부개정예규안〉	
제11조(의료비 보상) 도지사는 지도자 및 선수가 훈련 또는 경기 중 부상으로 인하여 치료가 필요한 경우로서 「산업재해 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재보험을 지급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의료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의료비 보상) 에 ‘훈련이나 경기 중의 부상’을 ‘훈련이나 경기로 인한 부상 등’으로 수정

- 「산업재해 보상보험법」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에는 업무상 사고에 대한 규정과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휴게시간 중 발생한 사고, 시설물 등의 결함으로 인한 사고 등을 재해로 규정하고 있음
- 직장운동경기부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을 받는 근로자로서 「산업재해 보상보험법」의 기준에 의한 보장을 받을 수 있으나
- 해당 조항의 경우 훈련이나 경기 중의 부상으로만 의료비를 보상받을 수 있다고 오인할 수 있음

- 따라서 제11조(의료비 보상)에 ‘훈련이나 경기 중의 부상’을 ‘훈련이나 경기로 인한 부상 등’으로 수정하여 지도자와 선수의 알권리를 보장해야 함

2) 이의신청 기간 연장

해당조항	권고내용
〈충청남도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	
제5조(이의신청) 신청인은 지급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지급결정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시장군수는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 제5조(이의신청) 는 7일의 이의신청 기간을 연장할 것을 권고

- 이의신청 제도는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인이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재심사를 받도록 하는 제도임
- 따라서 이의신청 기간은 이의신청인이 이의신청 여부를 결정하고 이의신청을 하기 위한 입증 자료를 준비해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해당 기관에 제출하는 기간으로 7일은 이의신청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기에 짧음
- 타 지자체 및 도의 자치법규 상 이의신청제도를 비교 검토해 이의신청 기간을 연장할 것을 권고함

3) 정당한 사유의 경우 해임 예외 사유로 규정 수정

해당조항	권고내용
〈충청남도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및 관리 지침 일부개정예규안〉	
제15조(해임) 도지사는 지도자 및 선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채용 계약을 중도에서 해지 할 수 있다. 4. 경기 또는 훈련을 태만히 하거나 경기 또는 훈련시간에 장소를 무단이탈한 경우	- 제15조(해임) 제4호에 지도자 및 선수가 정당한 사유를 설명할 수 있는 경우는 해임 사유로 예외 할 수 있도록 수정 권고

- 태만은 객관적 가치로 판단할 수 없는 단어로서 지도자나 선수의 해임 권한이 있는 도지사의 재량권 남용 우려가 있음

- 또한 「근로기준법」제23조 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하지 못한다”고 명시되어있음
- 따라서 지도자 및 선수의 부득이한 사유로 훈련에 온전히 임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한 경우를 설명할 수 있는 경우를 예외 하여 부당한 해임이 발생하지 않는 규정으로 수정해야 함

4) 실적 기준 구체적 마련으로 객관적 해임사유 마련

해당조항	권고내용
〈충청남도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및 관리 지침 일부개정예규안〉	
제15조(해임) 도지사는 지도자 및 선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채용계약을 중도에서 해지 할 수 있다. 8. 운영 실적이 3년간 연속 부진하여 체육지도자로서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15조(해임) 제8호에 체육지도자의 실적 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여 해임 사유를 객관적 기준에 의해 판단할 수 있도록 내용 수정

- 「근로기준법」제23조 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하지 못한다”고 명시되어있음
- 체육지도자에게 요구되는 성과 기준이 적절한지, 근무성적이나 능력 개선을 위한 기회가 부여됐는지, 사업장의 여건 등의 사정이 종합적으로 고려됐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객관적 기준이 필요함
- 따라서 체육지도자의 실적 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여 해임 사유를 객관적 기준에 의해 판단할 수 있도록 내용 수정해야 함

연번	해당부서	검토조례안	검토결과
1월			
1	공공건축과	충청남도 공공건축사업 업무추진지침 개정안	원안동의
2	교육지원담당관	충청남도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원안동의
3	예산담당관	충청남도 출자·출연 기관의 장 및 임원의 임기에 관한 조례안 제정안	원안동의
4	문화정책과	충청남도 문화재단 설립 및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개선권고
5	자치행정과	충청남도 사무 위임 조례·규칙 및 전결 처리 규칙 일부개정안	원안동의
6	경제정책과	충청남도 경제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원안동의
7	복지보육정책과	충청남도사회서비스원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원안동의
8	정책기획관	충청남도 충남연구원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개선권고
2월			
9	자치행정과	충청남도 공무원 징원관리 규정 일부개정안	원안동의
10	자치행정과	충청남도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인력관리 규정 일부개정안	원안동의
11	운영지원과	충청남도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원안동의
12	정책기획관	충청남도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규칙안	원안동의
13	안전정책과	충청남도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개선권고
14	대기환경과	충청남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선권고
3월			
15	자치행정과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원안동의
16	자치행정과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원안동의
17	시설유지관리과	충청남도 공공건축물 유지관리 업무추진 규정안	원안동의
18	자치행정과	충청남도 도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원안동의
19	인사담당관	충청남도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원안동의
20	인사담당관	충청남도 인사관리 규정 일부개정훈령안	원안동의

연번	해당부서	검토조례안	검토결과
21	운영지원과	충청남도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안	원안동의
22	운영지원과	충청남도 공무원 여비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원안동의
23	문화정책과	충청남도 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개선권고
24	여성가족정책관	충청남도 여성인력개발센터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안	원안동의
25	복지보육정책과	충청남도 행복기움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동의
26	보건정책과	충청남도 병원선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원안동의
27	데이터담당관	충청남도통계사무관리규정 일부개정안	원안동의
28	인구정책과장	충청남도 인구정책 및 인구감소지역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	개선권고
29	토지관리과장	충청남도 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 일부개정안	개선권고
30	안전정책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안	개선권고
31	안전정책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개선권고
4월			
32	세정과	충청남도 도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동의
33	자치행정과	충청남도 사무 전결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원안동의
34	운영지원과	충청남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동의
35	자치경찰행정과	충청남도 자치경찰 우리마을 안심지킴이 운영 조례 제정안	개선권고
36	자치경찰행정과	충청남도 자치경찰 우리마을 안심지킴이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	개선권고
37	충청남도119특수 대응단	충청남도항공구조구급대 운영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원안동의
38	해운항만과	충청남도 지방관리무역항 항만시설운영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원안동의
39	정책기획관	충청남도 주요업무의 외부평가에 대한 인센티브 적용 규정 일부 개정안	원안동의
5월			
40	기업지원과	충청남도 농공단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동의
41	스마트농업과	충청남도 재단법인 국제원예치유박람회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	원안동의
42	경제정책과	충청남도 지역경제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동의
43	하천과	생태하천복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안	원안동의

연번	해당부서	검토조례안	검토결과
6월			
44	충청남도감사위원회	충청남도 고충민원 등 조사·처리에 관한 규칙 제정안	원안동의
45	정책기획관	만 나이 사용 정착을 위한 일괄개정 자치법규안	원안동의
46	문화정책과	충청남도 공립예술단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동의
47	문화정책과	충청남도 재단법인 섬국제비엔날레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 제정안	원안동의
48	자치행정과	행정기구 및 정원관련 규칙·규정 일부개정안	원안동의
49	정책기획관	충청남도 적극행정 추진 지방공무원의 소송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 제정안	원안동의
7월			
50	체육진흥과	충청남도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및 관리 지침 일부개정예규안	개선권고
51	자치행정과	충청남도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인력관리 규정 일부개정안	원안동의
52	농식품유통과	충청남도 식생활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선권고
53	경제정책과	충청남도 경제위기대응시스템 구축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시행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원안동의
8월			
54	농식품유통과	충청남도 먹거리보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동의
55	세정과	충청남도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원안동의
56	세정과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동의
57	농촌활력과	충청남도 지역전통주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동의
58	투자통상정책관	충청남도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원안동의
59	건강증진식품과	충청남도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폐지안	원안동의
60	운영지원과	충청남도 청사방호 규정 전부개정훈령안	원안동의
61	자치행정과	충청남도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동의
62	데이터담당관	충청남도 통계 작성·보급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제정안	원안동의
63	여성가족정책관	충청남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동의
64	정책기획관	충청남도소송사건수행증인등의실비변상조례 폐지조례안	원안동의
65	정책기획관	충청남도프로젝트팀설치운영조례 폐지조례안	원안동의
66	정책기획관	충청남도 도정조정회의 조례 폐지조례안	원안동의

연번	해당부서	검토조례안	검토결과
67	자치행정과	충청남도 지방시대위원회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	개선권고
68	수산관리과	충청남도 귀어학교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동의
69	세정과	충청남도 도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선권고
9월			
70	도서관정책과	충청남도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선권고
71	자치행정과	충청남도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인력관리 규정 일부개정안	원안동의
72	투자통상정책관	충청남도 국제자문역 위촉기준 등에 관한 규칙 폐지규칙안	원안동의
73	복지보육정책과	충청남도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원안동의
74	농업정책과	충청남도 고령농업인 등의 지원조례 폐지조례안	원안동의
75	소방행정과	충청남도 소방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전부개정훈령안	원안동의
76	복지보육정책과	충청남도 공동생활가정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원안동의
77	농업정책과	충청남도 청년농수산인들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원안동의
78	기업지원과	충청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개선권고
79	자치행정과	충청남도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 실무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원안동의
80	교통정책과	충청남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동의
81	교통정책과	충청남도 자동차등록판 발급대행자 지정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원안동의
82	교통정책과	충청남도 자동차 운수사업에 관한 과징금 징수 규칙 폐지규칙안	원안동의
83	자치행정과	충청남도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	개선권고
84	운영지원과	충청남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안	원안동의
85	세정과	충청남도 모범납세자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원안동의
86	문화유산과	충청남도 국외소재문화재 보호 및 환수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동의
87	충남도립대학교 기획홍보처	충남도립대학교 발전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동의
88	교통정책과	충청남도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원안동의

연번	해당부서	검토조례안	검토결과
10월			
89	예산담당관	충청남도 재정계획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원안동의
90	일자리노동정책과	충청남도 근로자복지회관 조례 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원안동의
91	충청남도산림자원연구소 임업시험과	충청남도 수목원·지방정원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원안동의
92	구조구급과	충청남도 구조대 구조장비 보유규칙 폐지규칙안)	원안동의
93	탄소중립정책과	충청남도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원안동의
94	건강증진식품과	충청남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동의
95	안전정책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안	개선권고
96	자치경찰협력과	충청남도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원안동의
97	인사담당관	충청남도 비공무원 공정채용 규정 제정 규정안	개선권고
98	인구정책과	충청남도 양극화 해소를 위한 조례 폐지조례안	개선권고
99	경로보훈과	충청남도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규칙안	원안동의
100	자치행정과	충청남도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인력관리 규정 일부개정안	원안동의
101	자치행정과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동의
102	자치행정과	충청남도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동의
103	자치행정과	충청남도 사무 위임 규칙 일부개정조례안	원안동의
104	관광진흥과	충청남도 재단법인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 폐지 조례안	원안동의
11월			
105	안전정책과	충청남도 민방위 경보통제소 운영규정 일부개정훈령안	원안동의
106	자치행정과	충청남도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규칙 제정안	원안동의
107	경로보훈과	충청남도 의로운 도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원안동의
12월			
108	자치행정과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원안동의
109	자치행정과	충청남도 공무원 정원관리 규정 일부개정안	원안동의
110	자치행정과	충청남도 공무원 정원배정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원안동의

제4장

2023년 충청남도 시책 인권영향평가 결과

1. 평가개요
2. 추진경과
3. 시책 인권영향평가 결과
(지역사회 청소년 안전망 사업 활성화)
4. 시책 인권영향평가 결과
(저상버스 운수종사자 인식 및 환경 개선)
5. 시책 인권영향평가 결과
(노숙인 지원 정책)



2023 충청남도 인권영향평가 보고서

제4장 2023년 충청남도 시책 인권영향평가 결과

1

평가개요

- 평가대상 : 충청남도 인권위원회에서 선정한 시책 등 3개 분야

인권영향평가 평가 대상	담당 부서
지역사회 청소년 안전망 사업 활성화	여성가족정책관 청소년정책팀
저상버스 운수종사자 인식 및 환경 개선	교통정책과 교통정책팀
노숙인 지원 정책 개선	복지보육정책과 생활보장팀

- 평가시기 : 2023년 10월 ~ 12월
- 평가방법 : 각 시책별 평가단 구성 후 평가들을 마련하여 평가 진행
- 평가단구성 : 인권위원, 도민인권지킴이단, 전문가, 당사자 등으로 구성
- 추진근거 : 「충청남도 인권 기본 조례」 제9조, 제14조, 제19조

2

추진경과

- '23. 1. 6. 「2023 인권증진시책 시행계획」수립을 위한 실국별 시행계획서 제출 협조 요청(도민참여증진팀)
- '23. 3. 24. 제4기 도 인권위원회 제8차 회의 : 평가 대상 선정
 - 인권영향평가 대상 선정
 - 지역사회 청소년 안전망 사업 활성화
 - 저상버스 운수종사자 인식 및 환경 개선
 - 노숙인 지원 정책 개선
- '23. 4. 6. 담당부서별 시책 인권영향평가 대상 선정 결과 알림

- '23. 5. 11. 2023 시책 인권영향평가 추진 계획 수립
 - 추진시기 : 7~12월
 - 추진방법 : 평가대상 시책 3건 선정 후 평가단 구성하여 실시
- '23. 7. 7.~7. 31. 시책인권영향평가단 모집, 전문가 추천 요청
 - 평가단 17명(지역사회 6, 저상버스 6, 노숙인 5))
- '23. 8. 24. 시책 인권영향평가 워크숍
 - : 시책 인권영향평가 이해를 위한 교육
 - : 충청남도 시책 인권영향평가 설명
- '23. 11. 17. 시책 인권영향평가 추진을 위한 자료 협조 요청
 - : 지역사회 청소년 안전망 사업 활성화 시책(여성가족정책관 청소년정책팀)
 - 충남 소재 청소년 일시보호소 및 쉼터 규칙
 - : 저상버스 운수종사자 인식 및 환경 개선(교통정책과 교통정책팀)
 - 무장애승강장 운영계획 및 추진현황
 - : 노숙인 지원 정책 개선(복지보육정책과 생활보장팀)
 - 천안 희망쉼터 사업계획서, 생활시설 인권실태조사 결과
- '23. 10. 17.~12. 5. 평가단 운영
 - 지역사회 청소년 안전망 사업 활성화
 - '23. 10. 17.(화) 1차 회의
 - : 담당부서 시책 설명, 평가표 초안 작성
 - 단장 : 이연순(아산시비정규직센터 교육국장)
 - 서기 : 김남욱(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 안전망총괄팀장)
 - '23. 10. 25.(수) 2차 회의
 - : 평가표 초안보고, 평가표 마련, 평가방법 논의 등
 - '23. 11. 15.(수) 3차 회의
 - : 평가표 관련 논의 및 평가 추진
 - '23. 12. 5.(화) 5차 회의
 - : 평가표 최종 확정 및 평가 추진

■ 저상버스 운수종사자 인식 및 환경 개선

- '23. 10. 18.(수) 1차 회의

: 담당부서 시책 설명, 시책에 대한 인권쟁점 교육, 평가표 초안 작성

※ 교육 : 최재석(충남인권교육협의회 활동가) / 저상버스 운수종사자 현장인식과
인권적 측면의 정책 방향성 교육

• 단장 : 강봉준(충남강소기업인협동조합 이사장)

• 서기 : 이주형(보령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코디)

- '23. 11. 8.(수) 2차 회의

: 평가표 초안보고, 평가표 마련, 평가방법 논의 등

- '23. 11. 22.(수) 3차 회의

: 평가표 최종 확정 및 평가 추진

■ 노숙인 지원 정책 개선

- '23. 10. 18.(수) 1차 회의

: 담당부서 시책 설명, 시책에 대한 인권쟁점 교육, 평가표 초안 작성

※ 교육 : 서정화(열린여성센터 센터장) / 노숙인 현황 및 인권적 측면의 정책 방향성
교육

• 단장 : 지승훈(군장대학교 교수)

• 서기 : 맹준호(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 연구원)

- '23. 11. 16.(목) 2차 회의

: 평가표 초안보고, 평가표 마련, 평가방법 논의 등

: 저상버스 운수종사자 온라인 교육 동영상 평가단에 공유

- '23. 11. 27.(화) 3차 회의

: 평가표 최종 확정 및 평가 추진

시책 인권영향평가 결과

- ‘지역사회 청소년 안전망 사업 활성화’ -

【주 문】

도 여성가족정책관에게,

지역사회 청소년 안전망 사업 활성화 시책을 인권영향평가한 결과 청소년 쉼터 등 보호 시설과 청소년 안전망 사업의 인권침해 예방과 차별적 요소를 제거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개선사항을 도출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청소년 쉼터 등 시설 개선사항

- 가. 청소년의 주거권, 학습권, 여가 활동할 권리 등이 보장될 수 있는 공간 마련
- 나. 충남도내 청소년 보호시설 확충
- 다. 청소년 보호시설에 청소년들이 의견이나 개선점을 말할 수 있는 창구 마련
- 라. 청소년 보호시설에 청소년들에게 충분한 휴식 및 여유시간 부여
- 마. 청소년 대상 폭력 예방 교육 실시
- 바. 시설 내 성폭력 및 성희롱 예방, 신고 및 구제 등 규정 마련
- 사. 청소년 성문화 교육 시설 확충
- 아. 청소년 심리 건강비 지원
- 자. 청소년 심리 건강 서비스의 자살, 자해, 우울 등 유형별 맞춤 지원
- 차. ‘위기 청소년’ 용어를 ‘위기 또는 긴급 상황에 놓인 청소년’으로 변경
- 카. 위기 또는 긴급 상황에 놓인 청소년 인식개선 교육을 지역사회 청소년, 학생, 시민 대상 실시
- 타. 청소년 보호시설에 다양한 언어지원과 종교로 인한 차별 받지 않도록 규정 마련
- 파. 상담, 프로그램 운영, 시설 이용 등에 청소년에 대한 개인정보 수집, 이용은 최소화 되어야 함

- 하. 청소년 쉼터의 서약서, 생활규칙, 규정에 관한 인권영향평가 필요
- 가. 청소년의 접근성이 높은 곳에 청소년 긴급보호 시설 확충

2. 청소년 안전망 사업 개선사항

- 가. 가정 밖 청소년 보호자를 대상으로 필수교육 필요
- 나. 도민에게 긴급 또는 위기 청소년 발견시 구조나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에 대한 홍보 체계 마련
- 다. 청소년 안전망 민·관 협력체계 강화 및 모든 시민이 알 수 있는 모집 홍보 필요

【이 유】

I. 평가 개요

충청남도 인권위원회에서는 2023년 3월 24일 도민 인권 증진시책 중 ‘지역사회 청소년 안전망 활성화’시책을 인권영향평가 대상으로 선정하였고, 충청남도 인권센터에서는 인권 위원, 도민인권지킴이단, 전문가, 인권활동가, 도민인권보호관으로 이루어진 시책 인권영향 평가단을 구성하여 시책에 대한 인권영향평가를 진행했습니다.

‘지역사회 청소년 안전망 사업 활성화’ 시책 인권영향평가단은 워크숍과 1차 회의를 통해 단장 및 서기 선출을 하였고 워크숍을 포함해 총 5차례 회의를 진행했고, 워크숍 및 평가단 회의에서는 시책 인권영향평가 내용 숙지를 위한 교육, 담당 부서의 시책 설명, 평가기준 논의, 점검결과 논의 등을 거쳐 평가를 마무리하였습니다.

평가 기준으로는 인권침해, 구제수단, 공개, 참여 항목별로 지역사회 청소년 안전망 사업 활성화 시책에 대한 20개 평가 지표로 청소년 보호 시설의 청소년 인권 보호 여부, 청소년 보호 예산, 심리지원 서비스 등이 충분한지와 긴급 상황에 놓인 청소년에 대한 인식 개선, 안전망 사업 수혜자에 대한 차별 여부, 청소년 사생활 보호, 청소년 쉼터 규칙의 인권적 점검, 청소년 보호시설 종사자의 처우, 청소년 긴급보호소의 설치 및 홍보 여부 등에 대해 점검 하였습니다.

II. 평가 내용

1. 인권침해

- 가. 청소년 시설 등이 청소년의 주거권(쉼터 등 시설), 학습권, 여가 활동할 권리 등을 보장할 공간을 충분히 확보해 운영하고 있는지를 점검한 결과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이와 관련해 개선의견으로는 청소년 시설등은 청소년의 주거권, 학습권, 여가 활동할 권리 등이 보장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 나. 청소년 시설의 수용 인원 제한으로 불편을 겪을 경우 차선택이 마련되어 있는지를 점검한 결과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이와 관련해 개선의견으로는 충남도 전체를 볼 때 지역 내 보호시설이 부족하므로 현재 있는 보호시설 외 도내 보호시설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 다. 청소년 시설의 입소생들이 불편함을 느낄 경우 의견이나 개선점을 제기할 수 있는 절차나 방법이 마련되어 있는지를 점검한 결과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이와 관련해 개선의견으로는 청소년들이 의견이나 개선점을 말할 수 있는 창구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 라. 청소년 시설 입소생들의 충분한 휴식시간 및 여가 시간이 마련되어 있는지를 점검한 결과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이와 관련해 개선의견으로는 청소년 보호 시설의 청소년들에게 충분한 휴식시간 및 여유시간이 주어져야 합니다.
- 마. 청소년 간 언어 및 신체적 폭력을 방지하기 위한 정기적인 교육 및 지도를 실시하고 있는지를 점검한 결과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이와 관련해 개선의견으로는 청소년 보호 시설에서 청소년 대상 폭력 예방 교육이 실시 되어야 합니다.
- 바. 시설 내 성폭력이 발생하였을 경우 피해자의 비밀을 유지하며 피해지원을 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는지를 점검한 결과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고 이와 관련해 개선의견으로는 시설 내 성폭력 및 성희롱 예방 및 신고 및 구제 등 규정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 사. 청소년 성문화 교육을 위한 시설은 충분히 운영되고 있는지를 점검한 결과 천안과 홍성 두 곳 이외에는 없으므로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고 이와 관련해 개선 의견으로는 청소년 성문화 교육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 시설이 확충되어야 합니다.
- 아. 청소년이 필수로 지원받아야 할 심리 건강 지원비(치료비), 교통지원비, 식사지원비 예산이 집행되고 있는지를 점검한 결과 교통지원비, 식사지원비 이외 심리건강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고 개선의견으로는 청소년 건강권 차원에서 심리 건강 지원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 자. 청소년들이 필요로 하는 전문적인 심리지원 서비스가 유형별(자살, 자해, 우울) 맞춤형으로 세분화되어 지원되고 있는지를 점검한 결과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고 개선의견으로는 청소년 심리지원 서비스는 자살, 자해, 우울 등 유형별로 세분화되어 지원되어야 합니다.
- 차. ‘위기 청소년’ 용어가 부정적 이미지를 주므로 용어 개선이 필요한지를 살펴본 결과 부정적 이미지와 선입견을 주지 않는 ‘위기 또는 긴급 상황에 놓인 청소년’으로 용어 개선이 필요합니다.
- 카. 위기 또는 긴급 상황에 놓인 청소년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가 되고 있는지를 점검한 결과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고 개선의견으로는 지역사회 청소년, 학교, 시민 대상 인식 개선 교육 및 홍보가 필요합니다.
- 타. 안전망 사업을 지원 받는데 차별 받거나 차별 받을 수 있는 상황에 대한 점검이나 방안이 마련되어 있는지를 점검한 결과 다문화 청소년에 대한 통역 서비스 미제공, 종교를 이유로 입소 거부나 기타 서비스 미제공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고 청소년 보호시설에 다양한 언어지원과 종교로 인한 차별 받지 않도록 규정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 파. 청소년 안전망 사업지원 시 청소년의 사생활 보장 및 비밀유지에 관한 개인정보가 부당하게 수집·이용되고 있는지를 점검한 결과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고 상담, 프로그램 운영, 시설 이용 등에 청소년의 사생활 보장 및 필요로 하는 최소한의 개인정보가 수집·이용되어야 합니다.

- 하. 청소년 긴급보호소와 쉼터의 운영 규칙은 청소년들의 인권을 보장하고 있는지를 점검한 결과 청소년 쉼터의 운영 규칙이 청소년의 인권 보다는 시설 운영의 효율성에 맞추고 있어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고 청소년 쉼터의 서약서, 생활규칙, 규정에 관한 인권영향평가가 필요합니다.
- 가. 위기 청소년 지원을 위한 상담사의 역량과 상담의 질 향상을 위한 상담 인원 확보, 근무환경, 처우가 보장받고 있는지를 점검한 결과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고 청소년 상담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청소년 상담사의 증원 및 임금 개선 고용 안정이 필요합니다.

2. 구제수단

- 가. 청소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 긴급보호소나 긴급 보호 요청을 할 수 있는 기관이 있는지를 점검한 결과 청소년들이 접근하기 쉬운 지하철역, 시내 중심에 청소년 긴급보호소나 시설이 없어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와 청소년의 접근성이 높은 곳에 청소년 긴급보호시설이 확충되어야 합니다.
- 나. 가정 밖 청소년 지원 시 보호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 이뤄지고 있는지를 점검한 결과 그러한 교육이 없어 가정 밖 청소년 보호자를 대상으로 필수교육을 위한 법개정 필요와 프로그램 운영이 필요합니다.

3. 공개

- 가. 도민에게 긴급 또는 위기 청소년 발견시 구조나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에 대한 홍보 체계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점검한 결과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와 지원체계나 방법에 대한 교육, 홍보가 확대되어야 합니다.

4. 참여

- 가. 청소년이 필요한 정책을 제안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되어 있는지와 청소년 제안 및 의견이 정책에 반영이 되고 있는지를 점검한 결과 청소년이 필요한 정책을 제안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되어 청소년 제안 및 의견이 정책에 반영되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나. 민·관 협력체계가 청소년 안전을 위해 실효성 있게 작동되고 있는지를 점검한 결과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와 협력체계 강화 및 모든 시민이 알 수 있는 모집 홍보로 참여를 유도하여야 합니다.

Ⅲ. 결론

‘지역사회 청소년 안전망 사업 활성화’시책 인권영향평가 결과 청소년 쉼터 등 긴급보호 시설에서의 인권침해 예방 및 구제수단에 대해 보완이 필요하고 청소년 안전망 사업에 대한 공개 항목에서도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결과가 도출되었습니다.

청소년 쉼터 등 긴급보호시설은 위기 및 긴급 상황에 놓인 청소년들이 접근하기 쉬운 위치에 설치되어야 하고, 대상 청소년들의 사생활을 보호하면서도 긴급하게 필요로 하는 심리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청소년 쉼터 등 긴급 보호시설의 규정에 청소년 인권보호 규정 등이 추가되어야 합니다.

또한 청소년 쉼터 등 긴급보호시설에 종사하는 상담사는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므로 처우와 고용 안정을 위한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그 밖에 청소년 안전망 사업 대상 청소년에게 시민들이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에 대한 홍보 및 교육을 지역 주민 대상으로 실시하여 민관협력 체계 구축을 위한 사업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충청남도 인권센터는 「충청남도 인권 기본 조례」 제9조에 따라 실시한 시책 인권 영향평가 결과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023. 12. 20.

충청남도 인권센터

붙임. 시책 인권영향평가 결과

〈붙임〉

시책 인권영향평가 결과

- 지역사회 청소년 안전망 사업 활성화 -

■ 개요

- 평가시책 : 지역사회 청소년 안전망 사업 활성화
- 추진근거 : 「충청남도 인권 기본 조례」 제9조, 제14조, 제19조
- 담당부서 : 여성가족정책관 청소년정책팀
- 평가단 : 6명(인권위원, 도민인권지킴이단, 인권활동가, 전문가, 인권센터)

순번	성명	소속	직책	비고
1	고이숙	충남한부모가족상담복지센터	센터장	인권위원
2	전우석	상명대학교	교수	인권지킴이단
3	장은희	열린상담심리연구소	상담사	인권지킴이단
4	이연순 (단장)	아산시비정규직지원센터	교육국장	인권지킴이단
5	김남옥 (서기)	(재)충청남도여성가족 청소년사회서비스원	안전망총괄팀장	전문가
6	안성대	충청남도 인권센터	인권보호관	인권보호관

■ 추진 경과

- '23. 08. 24.(목) 평가단 워크숍
- '23. 10. 17.(화) 1차 회의
: 단장 및 서기 선출
: 저상버스 운수종사자 현장인식과 인권 측면의 정책방향성 교육
- '23. 10. 25.(수) 2차 회의
: 평가점검표 항목 작성
- '23. 11. 22.(수) 3차 회의
: 평가 결과 확정
- '23. 12. 5.(화) 4차 회의
: 평가표 최종 확정 및 평가 추진

[1] 평가 결과 종합의견

- 「지역사회 청소년 안전망 사업」에 대한 시책 인권영향평가를 수행했습니다. 본 인권영향평가는 지역사회 내 청소년 관련 자원을 연계하여 학업중단, 가출, 인터넷 중독 등 위기청소년에 대한 상담·보호·교육·자립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및 복지증진 도모에 있는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에 대한 것입니다.
- 시책 인권영향평가를 위해서 ①인권침해 ②구제수단 ③공개 ④참여의 네 가지 인권 분야를 설정하고 21개 평가항목에 대한 평가를 수행했습니다.
- 본 시책 인권영향평가의 결과로 평가단은, ①주거, 학습, 여가를 위한 시설의 충분한 공간 마련과 수용인원에 대한 시설 확보 ②청소년 의견 반영 창구, 휴식시간 보장, 폭력에 관한 예방교육 실시 ③성교육 시설 확충과 성희롱, 성폭력에 관한 규정 마련 ④ 심리건강 지원, 영역별 세분화된 심리지원이 되어야 하며 ⑤위기 청소년 용어 개선과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⑥언어와 종교로 인해 차별받지 않고 사생활이 보호될 수 있도록 하며 ⑦시설 운영규칙에 관한 인권영향평가 필요 ⑧청소년 상담사 인원 확보와 처우개선, 고용안정 ⑨긴급 구조요청을 할 수 있는 긴급보호소의 청소년 접근성 여부, 구조 및 홍보 체계 확대와 가정 밖 청소년 지원 시 보호자 교육 실시 ⑩민·관 협력체계에 모든 시민 참여를 위한 홍보가 이뤄져야 한다는 개선의견이 있었습니다.
- 특히 청소년 시설 종사자의 근무환경과 고용안정에 대한 개선점 의견이 있었는데 이는 상담의 질 향상과 안전망 사업 지속성과 연결되며 청소년에게도 영향을 주기에 중요합니다.
- 인권영향평가를 하면서 행정 영역에 인권 영역을 접목하는 어려움이 우리의 관심사 소홀했음을 보여주는 것 같아 좀 더 면밀히 살펴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특히, 쉼터(중·장기·일시보호소) 규정이나 생활규칙, 서약서에 대한 인권영향평가가 필요하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한 홍보와 협력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 ‘위기 청소년’이란 용어가 부정적 이미지와 선입견을 줄 수 있기에 ‘위기 또는 긴급 상황에 놓인 청소년’으로 개선해야 하며 위기 청소년이 개인의 문제로만 해석되지 않고 사회적 문제로 접근하기 위한 인식개선에 필요한 교육이나 홍보가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 지원 서비스는 다양한 기관과 연결되어 있으며 도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중요합니다. 건강한 성장을 위해 위기 청소년이 사회에서 소외되지 않고 차별받지 않도록 함께 하고자 하는 문화가 조성되어야 합니다.

[2] 항목별 평가내용

1) 인권침해

점검사항	점검결과
청소년 시설 등은 주거권(침터 등 시설), 학습권, 여가 활동할 권리 등을 보장할 공간이 충분히 확보되어 운영되는가?	① 예 ● 보완필요 ③ 아니오 ④ 해당사항없음
청소년 시설의 수용 인원 제한으로 불편을 겪을 경우 차선택이 마련되어 있는가?	① 예 ● 보완필요 ③ 아니오 ④ 해당사항없음
청소년 시설의 입소생들이 불편함을 느낄 경우 의견이나 개선점을 제기할 수 있는 절차나 방법이 마련되어 있는가?	① 예 ● 보완필요 ③ 아니오 ④ 해당사항없음
청소년 시설 입소생들의 충분한 휴식 시간 및 여가 시간이 마련되어 있는가?	① 예 ● 보완필요 ③ 아니오 ④ 해당사항없음
청소년 간 언어 및 신체적 폭력을 방지하기 위한 정기적인 교육 및 지도를 실시하고 있는가?	① 예 ● 보완필요 ③ 아니오 ④ 해당사항없음
시설 내 성폭력이 발생하였을 경우 피해자의 비밀을 유지하며 피해지원을 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는가?	① 예 ● 보완필요 ③ 아니오 ④ 해당사항없음
청소년 성문화 교육을 위한 시설은 충분히 운영되고 있는가?	① 예 ● 보완필요 ③ 아니오 ④ 해당사항없음
청소년이 필수로 지원받아야 할 예산이 집행되고 있는가? ① 심리 건강 지원비(치료비) ② 교통지원비 ③ 식사지원비	① 예 ● 보완필요 ③ 아니오 ④ 해당사항없음
청소년들이 필요로 하는 전문적인 심리지원 서비스가 유형별 맞춤으로 세분화 되어 지원되고 있는가? (예: 자살, 자해, 우울 등)	① 예 ● 보완필요 ③ 아니오 ④ 해당사항없음

점검사항	점검결과
‘위기 청소년’ 용어가 부정적 이미지를 주므로 ‘위기 또는 긴급 상황에 놓인 청소년’으로 용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가?	☒ 예 ☐ ② 보완필요 ☐ ③ 아니오 ☐ ④ 해당사항없음
위기 또는 긴급 상황에 놓인 청소년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가 마련되어 있는가?	☐ ① 예 ☒ ② 보완필요 ☐ ③ 아니오 ☐ ④ 해당사항없음
안전망 사업 지원받는데 있어 차별 받거나 차별 받을 수 있는 상황에 대한 점검이나 방안이 마련되어 있는가? ① 다문화 청소년에 대한 통역 서비스 제공 ② 종교를 이유로 입소 거부나 기타 서비스 미제공	☐ ① 예 ☒ ② 보완필요 ☐ ③ 아니오 ☐ ④ 해당사항없음
청소년 안전망 사업지원 시 청소년의 사생활 보장 및 비밀유지에 관한 개인정보가 부당하게 수집·이용되고 있는가? (예: 상담, 프로그램 운영, 시설 이용 등)	☐ ① 예 ☒ ② 보완필요 ☐ ③ 아니오 ☐ ④ 해당사항없음
청소년 긴급보호소와 쉼터의 운영 규칙은 청소년들의 인권을 보장하고 있는가?	☐ ① 예 ☒ ② 보완필요 ☐ ③ 아니오 ☐ ④ 해당사항없음
위기 청소년 지원을 위한 상담사의 역량과 상담의 질 향상을 위한 상담 인원 확보, 근무환경, 처우가 보장받고 있는가?	☐ ① 예 ☒ ② 보완필요 ☐ ③ 아니오 ☐ ④ 해당사항없음
지속적인 청소년 지원 및 상담을 위해 종사자들의 고용은 안정되어 있는가?	☐ ① 예 ☐ ② 보완필요 ☒ ③ 아니오 ☐ ④ 해당사항없음

가) 평가결과

- 쉼터나 센터 이용 시 충분한 공간 마련이 필요한데 특히, 꿈드림 공간의 협소함과 지자체별 차이가 있으며 시설 수용 인원 제한으로 타지역으로 가는 경우가 발생함
- 시설 이용 청소년들의 목소리 반영에 대한 방법과 폭력예방 등 필수 교육 실시, 성폭력 피해자 보호와 비밀유지에 대한 내용이 청소년 쉼터 등 시설 규정에서 나와 있지 않음
- 성교육을 하는 성문화센터가 천안과 홍성에만 있어 시설이 부족함
- 지원서비스 중 심리건강 지원비가 특정 사업에서만 이뤄지고 심리상담이 유형별로 세분화되어 이뤄지고 있지 않음

- ‘위기 청소년’이라는 용어가 선입견이나 부정적 이미지를 줄 수 있는 여지가 있고, 위기 청소년 인식개선에 대한 교육이나 홍보가 없음
- 다문화 언어지원은 4개국어(중국어, 베트남어, 러시아어, 몽골어)만 지원되고, 종교적 이유로 입소 거부나 서비스 미제공이 발생할 수 있음
- 상담사례 수집 이유로 개인정보나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고, 쉼터 운영규칙, 서약서가 다소 강제적이고 인권침해적 요소가 보임
- 청소년 상담 종사자 대부분이 비정규직 계약이며 위탁변경 시 고용 승계가 불투명하고 상담 인원 부족(점심 당직, 야간 근무)과 기관별 임금테이블이 상이하여 근무환경과 처우개선 필요함

나) 개선방안

- 주거권, 학습권, 여가활동을 위한 공간 마련과 보호시설 확충이 필요하며 청소년 의견이나 개선점이 반영될 수 있는 창구 마련, 입소생의 충분한 휴식·여가시간이 주어져야 하며 폭력예방 의무교육 이 실시 필요함
- 성희롱 교육을 위한 시설 확충과 시설 내 성희롱, 성폭력에 관한 규정 신설, 심리건강 지원과 상담의 영역별 세분화가 이뤄져야 하며 부정적 이미지나 선입견 예방을 위해 용어 개선과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가 되어야 함
- 다문화 청소년의 통역 서비스 차별 방지를 위해 다양한 언어 지원과 종교적인 이유로 차별받지 않도록 규정 마련이 필요함
-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관한 정보는 최소한의 필요로 수집되어야 하며 쉼터 운영 규칙에 대한 인권영향평가가 필요함
- 상담사의 고용안정과 상담의 질을 향상 위한 종사자의 처우개선이 이루어져야 함

2) 구체수단

점검사항	점검결과
청소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 긴급보호소나 긴급 보호 요청을 할 수 있는 기관이 있는가?	① 예 ● 보완필요 ③ 아니오 ④ 해당사항없음
가정 밖 청소년 지원 시 보호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 이뤄지고 있는가?	① 예 ② 보완필요 ● 아니오 ④ 해당사항없음

가) 평가결과

- 파출소 지구대 등이 있어 접근성이 있어 보이지만 청소년이 이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실효성 있는 기관이 필요함
- 보호자 교육이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지 않아 강제성이 없어 필수 영역으로 되어야 함(학교폭력은 법규정 있음). 상담 및 교육을 전문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기관연계를 통한 협업이 필요함

나) 개선방안

- 접근성이 높은 곳에 시설이 확충되어 실효성 높여야 함
- 부모교육이 필수로 이뤄지기 위한 법 규정 개정과 적극적인 프로그램 운영이 필요함

3) 공개

점검사항	점검결과
도민에게 긴급 또는 위기 청소년 발견시 구조나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에 대한 홍보 체계가 잘 이뤄지고 있는가?	① 예 ☒ ② 보완필요 ③ 아니오 ④ 해당사항없음

가) 평가결과

- 현재 1388통합지원 체계가 운영되고 있지만 일부 시민들만 활동하고 있고, 일반인들이 잘 모르고 있고 활동에 대한 내용도 잘 전달되고 있지 않음

나) 개선방안

- 지역에서 지원체계나 홍보 방법에 대한 교육과 홍보가 확대 되어야 함

4) 참여

점검사항	점검결과
청소년이 필요한 정책을 제안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되어 있는지와 청소년 제안 및 의견이 정책에 반영이 되고 있는가?	☒ ① 예 ② 보완필요 ③ 아니오 ④ 해당사항없음
민·관 협력체계가 청소년 안전을 위해 실효성 있게 작동되고 있는가?	① 예 ☒ ② 보완필요 ③ 아니오 ④ 해당사항없음

가) 평가결과

- 청소년 정책을 반영하기 위한 청소년 참여 위원회가 있으나 민관협력체계는 적극적인 사례 발굴을 위한 협력체계 강화가 필요하며 1388지원단 모집 홍보가 부족함

나) 개선방안

- 협력체계 강화가 필요하며 모든 시민이 알 수 있도록 모집 홍보로 시민의 참여를 유도하여야 함

시책 인권영향평가 결과

- ‘저상버스 운수종사자 인식 및 환경 개선’ -

【주 문】

도 교통정책과장에게,

저상버스 운수종사자 인식 및 환경 개선 시책을 인권영향평가한 결과 교통약자에 대한 인권침해 요소를 제거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개선사항을 도출했음을 알려드립니다.

1. 교육 관련 개선사항

- 가. 운수종사자 교육 시 대면교육 실시
- 나. 운수종사자 교육 시 저상버스 조작에 대한 실습 내용 포함
- 다. 교통약자의 유형별 응대법을 교육내용에 포함
- 라. 무장애 승강장 확대 노력 필요
- 마. 도로환경 개선(노면굴곡 및 방지턱 낮춤 등)노력 필요
- 바. BIS(버스정보시스템) 확대 운영 필요

2. 구제수단 관련사항

- 가. 시군 지자체를 통하여 인권침해에 대한 구제절차 마련 필요
- 나. 운수종사자의 근무환경개선 및 인권보호를 위한 구제책 마련 필요

3. 정보공개 관련사항

- 가. 사업(계획)관련 정보 공개 및 이해관계자에게 제공 필요

4. 참여 관련사항

가. 교통약자 이동권 관련 정책위원회에 교통약자 당사자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 개정

【이 유】

I. 평가 개요

충청남도 인권위원회에서는 2023년 3월 24일 도민 인권 증진시책 중 ‘저상버스 운수종사자 인식 및 환경 개선’ 시책을 인권영향평가 대상으로 선정하였고, 충청남도 인권센터에서는 인권위원, 도민인권지킴이단, 전문가, 인권활동가, 도민인권보호관으로 이루어진 시책 인권영향평가단을 구성하여 시책에 대한 인권영향평가를 진행했습니다.

‘저상버스 운수종사자 인식 및 환경 개선’ 시책 인권영향평가단은 워크숍과 1차 회의를 통해 단장 및 서기 선출을 하였고 워크숍을 포함해 총 4차례 회의를 진행했고, 워크숍 및 평가단 회의에서는 시책 인권영향평가 내용 숙지를 위한 교육, 시책에 대한 인권적 쟁점 교육, 담당 부서의 시책 설명, 평가기준 논의, 점검결과 논의 등을 거쳐 평가를 마무리 하였습니다.

평가 기준으로는 인권침해, 구제수단, 공개, 참여 항목별로 저상버스 운수종사자 인식 및 환경 개선 시책에 대한 13개 평가 지표로 저상버스 운수종사자의 교육(저상버스 운행 및 조작방법, 실습, 응대법 등), 저상버스 도입률을 높이기 위한 계획 수립, 안전한 저상 버스 운영을 위한 노면굴곡 및 방지턱 개선, 교통정보 제공 환경 조성, 인권침해 구제절차 마련, 사업정보 공개, 교통약자 당사자 참여 등에 대해 점검하였습니다.

II. 평가 내용

1. 인권침해

가. 저상버스 운수종사자에 대한 교육 내용에 운행 및 리프트 조작방법은 포함되어 있었고, 교육 대상자에게는 모든 저상버스 운전 기사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필수교육으로는 온라인 교육만 진행하고 있었고 실질적인 교육 효과를 보기 위해선 대면교육이 필요합니다.

- 나. 또한, 교육에 저상버스 조작에 대한 실습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기에 회사에서 교육을 진행하고, 담당부서에서 그에 대한 점검이 필요합니다.
- 다. 교통약자는 유형이 다양하다 보니 유형별 교통약자 응대 교육을 포함해야 하고, 특히 휠체어 장애인뿐만 아니라 시각장애인이나 청각장애인, 노인에 대한 응대 법도 함께 포함되어야 합니다.
- 라. 저상버스 도입률을 높이기 위한 계획은 수립되어 실행되고 있었으나, 실현 가능한 목표를 설정하여 추진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 마. 천안시는 저상버스 탑승에 어려움을 주지 않는 무장애승강장에 대한 운영을 확대하고 있으나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며, 이외 시군은 무장애승강장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충남도와 시군이 협력하여 무장애승강장을 전체 시군으로 확대할 필요성이 있고, 특히 가로수의 경우 무장애승강장 설치 시 제거하여야 하나, 도시 미관 및 시민의 쾌적한 생활권과 충돌할 수 있으니, 이를 충분히 고려하여 무장애승강장을 확대 설치해야 합니다.
- 바. 저상버스가 운행할 수 있는 도로환경 개선(노면 굴곡 및 방지턱낮춤 등)을 위한 노력은 수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과속방지턱의 경우 과속으로 인한 사고위험이 높은 도로에 속도저감을 위해 설치하는 교통안전시설인 만큼 그 높이를 낮출 경우 속도저감 효과가 미비하여 과속을 방지하기 어렵기 때문에 저상버스 운행과 과속 방지의 이익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두 가지 관점을 고려하여 도로환경 개선 추진방안을 수립해야 합니다.
- 사. 교통약자들이 교통정보에 대한 정보를 쉽게 얻기 위해서는 BIS(버스정보시스템, Bus Information System)를 보다 확대하여 운행하여야 합니다.

2. 구제수단

- 가. 버스 내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에 대한 대책 및 구제 절차는 별도로 없었고, 도청 인권센터의 인권보호 대상도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시군 지자체를 통해서 인권 침해에 대한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나. 운송종사자의 근무환경 개선과 인권보호를 위한 구제책은 없었습니다. 사업장 내에 구제절차도 마련해야하고, 지자체 예산지원에서 현물성 보조보다는 운수종사자들의 거점별 휴식공간과 인권보장을 위한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합니다.

3. 공개

- 가. 사업(계획)관련 정보가 시민들과 이해관계자들에게 충분하게 공개되고 제공되지는 않았습니다. 무장애 승강장, 도로방지턱 개선, 버스정보시스템 등에 대한 복합적 정보 등이 공개되어야 합니다.

4. 참여

- 가. 저상버스 이용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 위원회에 교통약자 당사자가 참여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유관 위원회에 반드시 교통약자 당사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 조례를 제정·개정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하여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위촉직 위원에 「교통약자 등 이해관계자」를 추가하는 방안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충청남도 교통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 2조 제1호에 따른 교통약자 중 교육 관련 지식 및 활동 경험이 있는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담당부서에서는 이에 따른 위원 위촉을 수행해야 합니다.

Ⅲ. 결론

‘저상버스 운수종사자 인식 및 환경 개선’시책 인권영향평가 결과 교통약자에 대한 인권침해 요소를 제거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개선사항을 도출되었습니다.

본 시책 인권영향평가의 결과로 평가단은, ①교통약자를 위한 지원이 상당히 많은 자원과 다양한 시책을 필요로 한다는 점과 ②이 때문에 시책 계획시점부터 교육약자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는 점, 따라서 ③유관 위원회에 교통약자가 참여하여 현실에 대한 문제제기와 대안제시를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에 동의하였습니다.

특히 도로의 방지턱 문제와 무장애 승강장을 위한 가로수 제거 등은 다른 이해관계와 상충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도로의 방지턱은 저상버스 운행에 불편을 초래하지만

과속방지를 위해서 필요하며, 가로수는 무장애 승강장 운영과 승하차 편리성을 저해하지만 시민의 쾌적한 생활에 도움이 된다는 점에서 상충되는 이해관계가 사회갈등으로 발전되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이에, 충청남도 인권센터는 「충청남도 인권 기본 조례」 제9조에 따라 실시한 시책 인권영향평가 결과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023. 12. 20.

충청남도 인권센터

붙임. 시책 인권영향평가 결과

〈붙임〉

시책 인권영향평가 결과

- 저상버스 운수종사자 인식 및 환경 개선 -

■ 개요

- 평가시책 : 저상버스 운수종사자 인식 및 환경 개선
- 추진근거 : 「충청남도 인권 기본 조례」 제9조, 제14조, 제19조
- 담당부서 : 교통정책과 교통정책팀
- 평가단 : 6명(인권위원, 도민인권지킴이단, 인권활동가, 전문가, 인권센터)

순번	성명	소속	직책	비고
1	강봉준 (단장)	충남강소기업인협동조합	이사	인권위원
2	이주형 (서기)	보령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코디	인권지킴이단
3	배은경	한뼘인권행동	대표	인권지킴이단
4	정선희	충남여성장애인연대	대표	인권단체
5	홍지연	서울시립대학교	연구교수	전문가
6	안성대	충청남도 인권센터	인권보호관	인권센터

■ 추진 경과

- '23. 08. 24.(목) 평가단 워크숍
- '23. 10. 17.(화) 1차 회의
: 단장 및 서기 선출
: 저상버스 운수종사자 현장인식과 인권 측면의 정책방향성 교육
- '23. 10. 25.(수) 2차 회의
: 평가점검표 항목 작성
- '23. 11. 22.(수) 3차 회의
: 평가 결과 확정

[1] 평가 결과 종합의견

- 우리는「저상버스 운수종사자 인식 및 환경 개선」에 대한 시책인권영향평가를 수행했습니다. 본 인권영향평가의 대상은 교통약자가 이용하는 저상버스의 운수종사자가 교통약자를 대하는 인식과 그러한 인식을 형성하는 근무환경입니다.
- 시책 인권영향평가를 위해서 ①인권침해 ②구제수단 ③공개 ④참여의 네 가지 인권분야를 설정하고 13개 평가항목에 대한 평가를 수행했습니다.
- 본 시책 인권영향평가의 결과로 평가단은, ①교통약자를 위한 지원이 상당히 많은 자원과 다양한 시책을 필요로 한다는 점과 ②이 때문에 시책 계획시점부터 교육약자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는 점, 따라서 ③유관 위원회에 교통약자가 참여하여 현실에 대한 문제제기와 대안제시를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에 동의 하였습니다.
- 특히 도로의 방지턱 문제와 무장애 승강장을 위한 가로수 제거 등은 다른 이해관계와 상충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도로의 방지턱은 저상버스 운행에 불편을 초래하지만 과속방지를 위해서 필요하며, 가로수는 무장애 승강장 운영과 승하차 편리성을 저해하지만 시민의 쾌적한 생활에 도움이 된다는 점에서 상충되는 이해관계가 사회갈등으로 발전되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2] 항목별 평가내용

1) 인권침해

점검사항	점검결과
교육 장소와 교육 시간이 교육대상자들의 이동 및 교육에 불편함 없이 참여할 수 있는가?	① 예 ● 보완필요 ③ 아니오 ④ 해당사항없음
교육 대상자에 저상버스를 운전하는 기사(저상버스 운전하는 일반버스 기사 포함)는 모두 포함되는가?	● 예 ② 보완필요 ③ 아니오 ④ 해당사항없음
저상버스 운행 및 조작 방법(리프트, 휠체어 고정장치 등)에 대한 교육내용을 포함하고 있는가?	● 예 ② 보완필요 ③ 아니오 ④ 해당사항없음

점검사항	점검결과
저상버스 조작에 대한 실습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가?	① 예 ② 보완필요 ● 아니오 ④ 해당사항없음
교통약자의 유형별 응대법이 교육내용에 포함되어 있는가?	① 예 ● 보완필요 ③ 아니오 ④ 해당사항없음
저상버스 도입률을 높이기 위한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가?	● 예 ② 보완필요 ③ 아니오 ④ 해당사항없음
저상버스 탑승의 어려움이 있는 승강장의 실태조사가 이뤄지고 있는가? ex) 탑승을 저해하는 장애물, 가로수 등	① 예 ● 보완필요 ③ 아니오 ④ 해당사항없음
저상버스가 운행될 수 있는 노면 굴곡 및 방지턱 개선을 위한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가?	① 예 ② 보완필요 ● 아니오 ④ 해당사항없음
교통약자들이 교통정보에 대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는 환경으로 조성되어 있는가? ex) 버스 내 점자표기, 위치정보, 음성안내 등	① 예 ● 보완필요 ③ 아니오 ④ 해당사항없음

가) 평가결과

- 교육대상자에 대한 교육 장소와 교육 시간이 특정되어 있어서, 교육대상자들이 교육을 받기에 불편하여 개선이 필요함.
- 교육대상자에 저상버스를 운전하는 기사는 모두 포함되었음
- 저상버스 운행 및 조작방법에 대한 교육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 저상버스 조작에 대한 실습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 실습은 회사가 교육하고 이 교육에 대한 지자체의 점검이 필요함. 이론적인 교육보다는 가능하다면 회사 내부에서 실습을 위주로 교육하고, 교육결과를 시군 지자체에 보고하도록 하는 것도 필요함.
- 저상버스 운수종사자들의 교육도 중요하지만, 교통약자 유형에 대한 사례인식을 위한 교통약자 응대에 대한 실무적인 개선이 필요한 시점임. 교육내용에 교통

약자의 유형별로 응대법이 포함되어야 하나, 일부 유형에만 국한하고 있음. 예를 들어 시각장애인이나 청각장애인 또는 거동이 불편한 노인에 대한 응대법이 교육내용에 포함되어야 함.

- 저상버스 도입률을 높이기 위한 계획은 수립되었으며, 이에 따라 실행하고 있음. 그러나 수차상 계획보다 실현가능한 목표를 포함한 계획 수립이 필요함.
- 천안시는 저상버스 탑승에 어려움을 주지 않는 무장애승강장에 대한 운영을 확대하고 있으나 아직 충분하지 않으며, 이외 시군은 무장애승강장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음. 따라서 충남도와 시군이 협력하여 무장애승강장을 전체 시군으로 확대해야 함. 특히 가로수의 경우 무장애승강장 설치 시 제고하여야 하나, 도시미관 및 시민의 쾌적한 생활권과 충돌할 수 있으니, 이를 충분히 고려하여 무장애승강장을 확대 설치해야 함.
- 저상버스가 운행할 수 있는 도로환경 개선(노면 굴곡 및 방지턱낮춤 등)을 위한 노력은 수행되지 않고 있음. 과속방지턱의 경우 과속으로 인한 사고위험이 높은 도로에 속도저감을 위해 설치하는 교통안전시설인 만큼 그 높이를 낮출 경우 속도저감 효과가 미비하여 과속을 방지하기 어렵기 때문에 저상버스 운행과 과속방지의 이익이 충돌하고 있음. 따라서 두 가지 관점을 고려하여 추진방안을 수립해야 함.
- 교통약자들이 교통정보에 대한 정보를 쉽게 얻기 위해서 BIS(버스정보시스템, Bus Information System)을 보다 확대하여 운행하여야 함.

나) 개선방안

- 저상버스 기사에 대한 실습 위주의 교육이 필요함. 저상버스가 필요한 교통약자는 장애인, 노인, 어린이 등으로 다양합니다. 또한 장애인도 지체장애 뿐만 아니라 시각장애, 청각장애, 발당장애 등으로 다양합니다. 따라서 다양한 교통약자에 대한 대응방안을 실습위주로 교육해야 함.
-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성 제고는 저상버스 도입만으로 달성할 수 없습니다. 저상버스와 함께 무장애 승강장과 도로방지턱 개선 그리고 버스정보시스템이 함께 작용해야 함. 따라서 이러한 복합적인 시책을 함께 다루는 접근이 필요함.

2) 구제수단

점검사항	점검결과
버스 내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에 대한 대책 및 구제 절차가 마련되어 있는가?	① 예 ● 보완필요 ③ 아니오 ④ 해당사항없음
운수종사자의 근무환경 개선과 인권보호를 위한 구제책이 마련되어 있는가?	① 예 ② 보완필요 ● 아니오 ④ 해당사항없음

가) 평가결과

- 버스 내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에 대한 대책 및 구제 절차는 별도로 없으며, 도청 인권센터의 인권보호 대상도 아님. 따라서 시군 지자체를 통해서 인권침해에 대한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 운수종사자의 근무환경 개선과 인권보호를 위한 구제책은 없음. 사업장 내에 구제절차를 설정하는 노력이 필요함. 특히 지자체 예산지원에서 현물성 보조 보다는 운수종사자들의 거점별 휴식공간과 인권보장을 위한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함.

나) 개선방안

- 교통약자의 인권뿐만 아니라 운송종사자의 인권도 보호할 수 있는 절차 수립이 필요함. 따라서 이에 대한 시군 지자체의 보다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함.

3) 공개

점검사항	점검결과
사업(계획)관련 정보가 시민들과 이해관계자들에게 적법하고 절차에 맞게 공개되고 제공되었는가?	① 예 ● 보완필요 ③ 아니오 ④ 해당사항없음

가) 평가결과

- 사업(계획)관련 정보가 시민들과 이해관계자들에게 충분하게 공개되고 제공되지는 않음. 무장애승강장 등 추가적인 정보를 충분하에 제공하여야 함.

나) 개선방안

- 위에서 언급했듯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성 제고는 저상버스와 함께 무장애 승강장과 도로방지턱 개선 그리고 버스정보시스템이 함께 작용해야 함. 따라서 이에 대한 복합적인 정보가 공개되고 제공되어야 함.

4) 참여

점검사항	점검결과
저상버스 이용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 위원회에 교통약자 당사자가 참여하고 있는가?	① 예 ② 보완필요 ● 아니오 ④ 해당사항없음

가) 평가결과

- 저상버스 이용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 위원회에 교통약자 당사자가 참여하지 못하고 있음. 따라서 유관 위원회에 반드시 교통약자 당사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 조례를 제정·개정해야 함. 이를 위하여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위촉직 위원에 「교통약자 등 이해관계자」를 추가하는 방안 등을 고려해야 함. 특히 「충청남도 교통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 2조 제1호에 따른 교통약자 중 교육 관련 지식 및 활동 경험이 있는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도청은 이에 따른 위원위촉을 수행해야 함.

나) 개선방안

- 유관 위원회에 교통약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조례에 명시해야 하며, 위원회 참여가 이루어지는지 인권센터에서 감시활동을 수행하도록 권고함.

시책 인권영향평가 결과

- ‘노숙인 지원 정책’ -

【주 문】

도 복지보육정책과에,

노숙인 지원 정책을 인권영향평가한 결과 도 노숙인 지원 정책의 인권침해 예방과 차별적 요소를 제거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개선사항을 도출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청소년 쉼터 등 시설 개선사항

- 가. 여성과 외국인 노숙인 발굴과 지원이 필요함
- 나. 노숙인 실태조사 시 만성 노숙인 현황 파악 및 지원정책 마련
- 다. 결핵 등 감염병 무료 검진 및 치료, 퇴원 후 사후관리를 위한 임시 주거 지원 필요
- 라. 동절기 거리 노숙인 임시 주거 지원 시 주거복지지원센터 설치로 체계적 지원 필요
- 마. 거리노숙인 일자리 지원 및 시설 퇴소한 노숙인에 대한 지원 지속할 필요
- 바. 천안 이외 권역별 거리 노숙인 거점 마련 및 상담할 수 있는 기반 마련 필요
- 사. 노숙인 지원 시설 직원의 장기 휴가 및 병가 보장하고 그로 인한 대체 인력 활용 방안 체계 마련
- 아. 노숙인 대상 인권교육 실시
- 자. 알코올 중독 등 위기관리 대상 노숙인 발굴을 위한 노숙인거점센터 마련 및 중앙 정부의 정책(위기 노숙인에 대한 공모사업) 참여로 지원 체계 마련
- 차. 노숙인 당사자를 대변할 수 있는 단체나 당사자를 노숙인 지원 자문 위원회에 참여시킴

【이 유】

I. 평가 개요

충청남도 인권위원회에서는 2023년 3월 24일 도민 인권 현안으로 ‘노숙인 지원 정책’을 인권영향평가 대상으로 선정하였고, 충청남도 인권센터에서는 인권위원, 도민인권지킴이단, 전문가, 인권활동가, 도민인권보호관으로 이루어진 시책 인권영향평가단을 구성하여 노숙인 지원 정책에 대한 인권영향평가를 진행했습니다.

‘노숙인 지원 정책’ 인권영향평가단은 워크숍과 1차 회의를 통해 단장 및 서기 선출을 하였고 워크숍을 포함해 총 4차례 회의를 진행했고, 워크숍 및 평가단 회의에서는 시책 인권영향평가 내용 숙지를 위한 교육, 현장 활동가로부터 듣는 노숙인 정책에 대한 점검, 담당 부서의 정책 설명, 평가기준 논의, 점검결과 논의 등을 거쳐 평가를 마무리하였습니다.

평가 기준으로는 인권침해, 구제수단, 공개, 참여 항목별로 노숙인 지원 정책에 대한 11개 평가 지표로 소수자 노숙인 지원, 노숙인 실태조사, 노숙인 의료지원, 거리노숙인 동절기 주거 지원 및 소득 보조, 노숙인 상담소, 노숙인 대상 인권교육, 노숙인 인권침해 상담, 조사, 구제 절차, 위기관리 대상 노숙인 발굴 지원, 노숙인 참여 위원회의 당사자 및 노숙인 지원 단체의 참여, 노숙인 지원 시설 종사자 지원 등에 대해 점검하였습니다.

II. 평가 내용

1. 인권침해

가. 여성 및 외국인 노숙인에 대한 지원정책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없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충청남도에 노숙인 쉼터는 1곳으로 천안에 있는데 여기에는 한국 국적의 남성 노숙인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최근 보건복지부 자료에 의하면 소수이지만 여성 노숙인이 있다고 합니다. 또한 충남의 높은 외국인 주민 비율에 따라 외국인 노숙인이 점차 생겨 나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충남도 노숙인 정책도 여성과 외국인 노숙인 발굴과 지원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나. 충남지역 노숙인 현황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는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점검한 결과

실태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만성 노숙인에 대한 현황 파악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즉 노숙인 실태조사 시 노숙인이 된 지 1년 미만 인지, 1년 이상인지를 조사하여 만성 노숙인 현황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지원 정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 다. 충남지역 노숙인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의료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점검한 결과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개선 방안으로는 아웃리치 등을 통해 발굴된 노숙인의 의료적 지원이 필요한 경우, 지원할 수 있는 지원체계 마련이 필요한데 공공의료원 및 보건소 등과 연계한 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무료로 진료 받을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결핵 등 감염병의 경우 무료 검진 및 치료를 위한 체계를 마련하고 퇴원 후 사후관리를 위한 임시 주거 지원이 필요합니다.
- 라. 동절기 거리노숙인 보호를 위한 임시주거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점검한 결과 현재 천안에서 하고 있는 동절기 거리노숙인 임시 주거지원을 주거복지지원을 위한 주거복지지원센터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기관을 설치하여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 마. 노숙인의 기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소득 보조는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점검한 결과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개선 방안으로 거리노숙인에 대한 일자리 지원이 필요하고 시설에서 자립을 통해 퇴소한 노숙인에 대한 지원도 지속할 필요가 있습니다.
- 바. 노숙인이 접근 가능한 지역에 상시로 상담할 수 있는 상담소가 설치되어 있는지 점검한 결과 그렇지 않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천안의 경우, 아웃리치가 이루어져 있어서 상담소 역할을 하고 있으나, 천안 이외의 지역에서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서, 천안 이외의 광역별 거리노숙인 거점을 마련해서 상담을 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이 필요합니다.
- 사. 노숙인 서비스 지원 향상을 위한 종사자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점검한 결과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노숙인 서비스 지원향상을 위한 노숙인 시설의 직원 역량강화는 진행하는 것으로 보이나, 직원의 장기휴가 및 병가를 보장하고 그로 인한 대체인력 활용 방안 등의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2. 구제수단

- 가. 노숙인 당사자에 대한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있는지를 점검한 결과 그렇지 않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다른 분야(장애인 등)에서는 그 분야에 맞는 인권교육을 마련하고 있기 때문에 노숙인에 대한 인권교육 실시가 필요합니다.
- 나. 노숙인이 인권침해를 당했을 때, 상담 및 조사, 구제절차가 마련되어 있는지를 점검한 결과 그렇지 않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노숙인이 인권침해를 당했을 때 구제절차를 마련하고, 노숙인에게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다. 알코올 중독 등 위기관리 대상 노숙인 발굴을 위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점검한 결과 그렇지 않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개선 방안으로는 노숙인거점센터 마련 및 중앙정부의 정책(위기 노숙인에 대한 공모사업)에 참여하여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3. 참여

- 가. 노숙인 참여위원회에 당사자를 대변할 수 있는 단체나 당사자가 참여하고 있는지를 점검한 결과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노숙인 지원을 위한 자문을 하는 정책 위원회에 당사자를 대변할 수 있는 단체나 당사자를 참여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 나. 민·관 협력체계가 청소년 안전을 위해 실효성 있게 작동되고 있는지를 점검한 결과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와 협력체계 강화 및 모든 시민이 알 수 있는 모집 홍보로 참여를 유도하여야 합니다.

Ⅲ. 결론

‘노숙인 지원 정책’을 인권영향평가한 결과 노숙인 인권침해 예방 및 구제수단, 참여 항목에서 보완이 필요하거나 지원 정책이 부재하다는 결과 도출되었습니다.

충청남도에는 천안시에만 노숙인 쉼터가 마련되어 있어 천안 이외 다른 시군 지역 노숙인을 위한 쉼터와 거리 노숙인, 여성과 외국인 노숙인에 대한 지원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특히 동절기 거리 노숙인을 위한 임시 주거 지원, 결핵 등 감염병에 걸린 노숙인의 치료 지원, 노숙인 거점 지역에 노숙인 상담소가 설치되지 않아 충청남도 차원의 노숙인 지원 정책이 대폭 개편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노숙인을 대상으로 인권 교육 실시, 인권침해를 당한 경우 상담, 조사 및 구제 절차 마련, 노숙인 지원 정책 수립 시 위원회에 노숙인을 대변하는 단체나 노숙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밖에 노숙인 지원 시설 종사자가 병가나 장기 휴가 시 대체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 노숙인 지원 서비스가 중단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충청남도 인권센터는 「충청남도 인권 기본 조례」 제9조에 따라 실시한 시책 인권 영향평가 결과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023. 12. 20.

충청남도 인권센터

붙임. 시책 인권영향평가 결과

〈붙임〉

시책 인권영향평가 결과

- 노숙인 지원 정책 -

■ 개요

- 평가대상 : 노숙인 지원 정책
- 추진근거 : 「충청남도 인권 기본 조례」 제9조, 제14조, 제19조
- 담당부서 : 복지보육정책과 생활보장팀
- 평가단 : 5명(인권위원, 도민인권지킴이단, 전문가, 인권센터)

순번	성명	소속	직책	비고
1	김도윤	마음두레	대표	인권위원
2	지승훈	군장대학교	교수	인권지킴이단
3	맹준호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	연구원	전문가
4	임덕영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정책연구센터	부연구위원	전문가
5	안성대	충청남도 인권센터	인권보호관	인권센터

■ 추진 경과

- '23. 08. 24.(목) 평가단 워크숍
- '23. 10. 18.(수) 1차 회의
 - : 담당부서 시책 설명, 시책에 대한 인권쟁점 교육, 평가표 초안 작성
 - ※ 교육 : 서정화(열린여성센터 센터장) / 노숙인 현황 및 인권적 측면의 정책 방향성 교육
- 단장 : 지승훈(군장대학교 교수)
- 서기 : 맹준호(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 연구원)
- '23. 11. 16.(목) 2차 회의
 - : 평가표 초안보고, 평가표 마련, 평가방법 논의 등
- '23. 11. 27.(화) 3차 회의
 - : 평가표 최종 확정 및 평가 추진

[1] 평가 결과 종합의견

- ‘노숙인 지원정책’을 인권영향평가한 결과 노숙인 인권침해 예방 및 구제 수단, 참여 항목에서 보완이 필요하거나 지원정책이 부재하다는 결과가 도출되었습니다.
- 충청남도에는 천안시에만 노숙인 쉼터가 마련되어 있어 천안 이외 다른 시군 지역 노숙인을 위한 쉼터와 거리 노숙인, 여성과 외국인 노숙인에 대한 지원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특히 동절기 거리 노숙인을 위한 임시 주거 지원, 결핵 등 감염병에 걸린 노숙인의 치료 지원, 노숙인 거점 지역에 노숙인 상담소 설치 등 충청남도 차원의 노숙인 지원정책이 대폭 개편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또한 노숙인을 대상으로 한 인권교육 실시, 인권침해를 당한 경우 상담, 조사 및 구제 절차 마련, 노숙인 지원정책 수립 시 위원회에 노숙인을 대변하는 단체나 노숙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그 밖에 노숙인 지원 시설 종사자가 병가나 장기 휴가 시 대체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 노숙인 지원 서비스가 중단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2] 항목별 평가내용

1) 인권침해

평가사항	평가결과
여성 및 외국인 노숙인에 대한 별도의 지원정책이 있는가?	① 예 ② 보완필요 ● 아니오
충남지역 노숙인의 현황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는 이루어지고 있는가?	① 예 ● 보완필요 ③ 아니오
충남지역 노숙인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의료지원은 이루어지고 있는가?	① 예 ● 보완필요 ③ 아니오

평가사항	평가결과
동절기 거리노숙인 보호를 위한 임시거주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① 예 ● 보완필요 ③ 아니오
노숙인의 기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소득보조는 이루어지고 있는가?	① 예 ● 보완필요 ③ 아니오 ④ 해당사항없음
노숙인이 접근 가능한 지역에 상시로 상담할 수 있는 상담소가 설치되어 있는가?	① 예 ② 보완필요 ● 아니오
노숙인 서비스 지원 향상을 위한 종사자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가(대체인력, 역량강화 등)?	① 예 ● 보완필요 ③ 아니오

가) 평가결과

- 충청남도에 노숙인 쉼터는 1곳으로 천안에 있는데 여기에는 한국 국적의 남성 노숙인만 이용할 수 있어 여성 및 외국인 노숙인에 대한 지원정책이 부재함
- 충남지역 노숙인 현황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는 이루어지고 있으나 만성 노숙인에 대한 현황 파악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 충남지역 노숙인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의료지원은 이루어지고 있으나 보완이 필요함
- 동절기 거리노숙인 보호를 위한 임시 주거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보완이 필요함
- 노숙인의 기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소득 보조는 이루어지고 있으나 보완이 필요함
- 노숙인이 접근 가능한 지역에 상시로 상담할 수 있는 상담소 부재함
- 노숙인 시설의 직원 역량강화는 진행하는 것으로 보이나 그 밖의 지원이 부재하여 노숙인 서비스 지원향상을 위해 종사자 지원이 필요함

나) 개선방안

- 최근 보건복지부 자료에 의하면 소수이지만 여성 노숙인이 있고, 충남의 높은 외국인 주민 비율에 따라 외국인 노숙인이 점차 생겨 나고 있어 충남도 여성과 외국인 노숙인 발굴과 지원이 필요함

- 노숙인 실태조사 시 노숙인이 된 지 1년 미만 인지, 1년 이상인지를 조사하여 만성 노숙인 현황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지원정책이 마련되어야 함
- 아웃리치 등을 통해 발굴된 노숙인의 의료적 지원이 필요한 경우, 공공의료원 및 보건소 등과 연계한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무료로 진료 받을 수 있는 체계 구축 필요함. 특히 결핵 등 감염병은 무료 검진 및 치료, 퇴원 후 사후관리를 위한 임시 주거 지원이 필요함
- 천안에서 하고 있는 동절기 거리 노숙인 임시 주거 지원을 주거복지지원센터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기관을 설치하여 체계적으로 지원할 필요 있음
- 거리노숙인에 대한 일자리 지원이 필요하고 시설에서 자립을 통해 퇴소한 노숙인에 대한 지원도 지속할 필요 있음
- 천안 이외의 광역별 거리 노숙인 거점을 마련해 상담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이 필요함
- 노숙인 지원시설 직원의 장기 휴가 및 병가를 보장하고 그로 인한 대체 인력 활용 방안 등의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2) 구제수단

가) 평가결과

점검사항	점검결과
노숙인 당사자에 대한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있는가?	① 예 ② 보완필요 ● 아니오
노숙인이 인권침해를 당했을 때, 상담 및 조사, 구제절차가 마련되어 있는가?	① 예 ② 보완필요 ● 아니오
알코올 중독 등 위기관리 대상 노숙인 발굴을 위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① 예 ② 보완필요 ● 아니오

- 노숙인 당사자에 대한 인권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 노숙인이 인권침해를 당했을 때, 상담 및 조사, 구제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 알코올 중독 등 위기관리 대상 노숙인 발굴을 위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나) 개선방안

- 다른 분야(장애인 등)에서는 그 분야에 맞는 인권교육을 마련하고 있으므로 노숙인에 대해서도 인권교육 실시가 필요함
- 노숙인이 인권침해를 당했을 때 상담 및 조사, 구제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이를 노숙인에게 홍보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알코올 중독 등 위기관리 대상 노숙인 발굴을 위한 지원을 위해 노숙인거점센터 마련 및 중앙정부의 정책(위기 노숙인에 대한 공모사업)에 참여하여 지원체계 마련이 필요함

3) 참여

점검사항	점검결과
노숙인 참여위원회에 당사자를 대변할 수 있는 단체나 당사자가 참여하고 있는가?	① 예 ☒ 보완필요 ③ 아니오

가) 평가결과

- 노숙인 지원을 위한 자문을 하는 정책 위원회에 노숙인 당사자를 대변할 수 있는 단체나 당사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보완이 필요함

나) 개선방안

- 노숙인 당사자를 대변할 수 있는 단체나 당사자를 노숙인 지원 자문위원회에 참여시키는 것이 필요함

참 고

1. 2022년 자치법규 인권영향평가 개선권고 결과
2. 2022년 시책 인권영향평가 개선권고 내용
 - 2022년 시책 인권영향평가 추진 세부내역
3. 충청남도 인권 기본 조례
4. 충남 도민 인권선언문



2023 충청남도 인권영향평가 보고서

참고 1

2022년 자치법규 인권영향평가 개선권고 결과

연번	해당부서	검토 조례안	검토결과
1월			
1	투자입지과	충청남도 외국인 투자유치 유공자 성과금 등 운영지침 전부개정 훈령안)	원안동의
2	공동체정책과	충청남도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원안동의
3	운영지원과	충청남도 정보공개 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	개선권고
4	미래성장과	충청남도 국제전시컨벤션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안	원안동의
5	미래성장과	충청남도 지식산업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안	원안동의
6	교육법무담당관	충청남도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개선권고
2월			
7	자치행정과	충청남도 사무 위임 조례·규칙 및 전결 처리 규칙 일부개정안	원안동의
8	자치행정과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개선권고
9	운영지원과	충청남도 공용차량 관리 규칙 일부개정안	개선권고
3월			
10	충청남도 감사위원회	충청남도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원안동의
11	충청남도 인재개발원	충청남도 인재개발원 교육훈련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규정안	개선권고
12	세정과	충청남도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원안동의
13	자치행정과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원안동의
4월			
14	충청남도 감사위원회	충청남도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개선권고
15	운영지원과	충청남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개선권고
16	운영지원과	충청남도 공용차량 관리 규칙 일부개정안	원안동의
17	해운항만과	충청남도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 제정안	개선권고
18	정보화담당관	충청남도 정보화 추진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개선권고
19	자치행정과	충청남도 시군의회 의원 지역구의 명칭 구역 및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원안동의

연번	해당부서	검토 조례안	검토결과
5월			
20	관광진흥과	충청남도 예비 관광특구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제정안	원안동의
21	운영지원과	충청남도 청사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원안동의
22	충남도서관	충남도서관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훈령안	개선권고
23	체육진흥과	충청남도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및 관리 지침 일부개정안	개선권고
24	해양정책과	충청남도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	원안동의
25	해운항만과	충청남도 지방관리무역항 항만시설운영규정 일부개정 규정안	개선권고
26	기후환경정책과	충청남도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부분수용
6월			
27	충청남도 감사위원회	충청남도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안(제정안)	개선권고
28	투자입지과	충청남도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원안동의
7월			
29	자치행정과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 개정안	원안동의
30	충청남도 감사위원회	충청남도 청렴서약제 운영규정 전부개정 규정안	원안동의
31	여성가족정책관	충청남도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원안동의
32	정책기획관	충청남도 학술연구용역 시행절차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개선권고
33	교육법무담당관	어려운 용어 정비를 위한 117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원안동의
34	운영지원과	충청남도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원안동의
35	균형발전과	충청남도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개선권고
36	혁신도시정책과	충청남도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개선권고
37	충청남도 감사위원회	충청남도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원안동의
38	토지관리과	충청남도 주택의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원안동의
39	노인복지과	충청남도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원안동의
8월			
40	충청남도 인재개발원	충청남도인재개발원의 충청남도민등에 대한 교육훈련운영 조례 제정안	개선권고
41	자치행정과	충청남도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개선권고
42	충청남도 감사위원회	충청남도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 지침 일부개정지침안	원안동의

연번	해당부서	검토 조례안	검토결과
9월			
43	건축도시과	충청남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개선권고
44	세정과	도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원안동의
45	세정과	도세 징수 조례	원안동의
46	세정과	도세 징수조례 시행규칙	원안동의
47	세정과	도세 조례	원안동의
48	세정과	도세 감면 조례	원안동의
49	농업정책과	충청남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원안동의
50	투자입지과	충청남도 외국인투자 촉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원안동의
51	자치행정과	충청남도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개선권고
52	여성가족정책관	충청남도 1인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원안동의
53	문화정책과	충남미술관 작품수집 및 관리 조례안	개선권고
54	문화정책과	충남 창작스튜디오 운영 규칙 제정안	개선권고
55	공동체정책과	충청남도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정안	원안동의
56	경제소상공과	충청남도 경제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원안동의
10월			
57	충청남도 감사위원회	충청남도 부패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등에 관한 운영지침 전부 개정 지침안	원안동의
58	자치행정과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개선권고
11월			
59	해양정책과	충청남도 환경정화운반선 관리·운영 규정 제정안	개선권고
60	자치행정과	충청남도 민원처리 담당자 휴대용 보호장비 운영지침 제정안	개선권고
61	자치행정과	충청남도 청원심의회 운영규정 제정 훈령안	개선권고
62	교통정책과	충청남도 자동차 운수사업에 관한 과징금 징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원안동의
12월			
63	교통정책과	충청남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동의
64	119종합상황실	충청남도 119종합상황실 운영규정 전부개정 훈령안	원안동의
65	충청남도 감사위원회	충청남도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	원안동의
66	충청남도 감사위원회	충청남도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원안동의

연번	해당부서	검토 조례안	검토결과
67	미래성장과	충청남도 지식재산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원안동의
68	예산담당관	충청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원안동의
69	정책기획관	충청남도 제안제도 운영 조례	원안동의
70	정책기획관	충청남도 정보화 추진 조례	원안동의
71	자치행정과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 규칙안	원안동의
72	자치행정과	충청남도 공무원 정원배정 규정 일부개정 규정안	원안동의
73	안전정책과	충청남도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동의
74	교육법무담당관	충청남도 소송사무 처리 예규 일부개정안	원안동의
75	농업정책과	충청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규칙안	개선권고
76	출산보육정책과	충청남도 공동생활가정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개선권고
77	자치행정과	충청남도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제정 조례안	개선권고
78	자치행정과	공무직 정원관리 및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인력관리 규정 일부개정안	원안동의
79	출산보육정책과	충청남도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	개선권고
80	출산보육정책과	충청남도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선권고
81	기후환경정책과	충청남도 환경 기본 조례	개선권고
82	기후환경정책과	충청남도 샘물 및 염지하수 관리에 관한 조례	원안동의
83	해양정책과	충청남도 섬 가꾸기 지원에 관한 조례	원안동의
84	해양정책과	충청남도 점박이물범 및 서식지 보전에 관한 조례	원안동의
85	해양정책과	충청남도 해양공간관리 위원회 및 협의회 구성 운영에 관한 조례	원안동의
86	해양정책과	충청남도 천일염산업 육성 조례	원안동의
87	해양정책과	충청남도 명품수산물 육성 및 지원조례	원안동의
88	문화정책과	충청남도 문화예술교육지원 조례	원안동의
89	문화정책과	충청남도 문화예술진흥조례	개선권고
90	문화정책과	충청남도 영상·영화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원안동의
91	문화정책과	충청남도 전통사찰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원안동의
92	문화정책과	충청남도 백제문화단지 관리운영 조례	원안동의
93	문화정책과	충청남도 국외소재문화재보호 및 환수활동지원 조례	개선권고
94	자치행정과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원안동의
95	자치행정과	충청남도 상징물 관리 조례	원안동의

연번	해당부서	검토 조례안	검토결과
96	자치행정과	충청남도 친일관련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 조례	원안동의
97	농업정책과	충청남도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원안동의
98	농업정책과	충청남도 우리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원안동의
99	농업정책과	충청남도 인삼공동상표 관리 조례	원안동의
100	농업정책과	충청남도 농산물 가격안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원안동의
101	농업정책과	충청남도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	개선권고
102	농업정책과	충청남도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축산농가 지원에 관한 조례	원안동의
103	경제소상공과	충청남도 생활임금 조례	원안동의
104	경제소상공과	충청남도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	원안동의
105	경제소상공과	충청남도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개선권고
106	경제소상공과	충청남도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원안동의
107	경제소상공과	충청남도 모범장수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원안동의
108	경제소상공과	충청남도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	개선권고
109	경제소상공과	충청남도 산업단지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조례	원안동의
110	경제소상공과	충청남도 숙련기술 장려에 관한 조례	개선권고
111	건설정책과	충청남도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개선권고
112	건설정책과	충청남도 물류단지 개발 및 활성화 지원 조례	개선권고
113	건설정책과	충청남도 주소정보 조례	개선권고
114	건설정책과	충청남도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 조례	개선권고
115	공동체정책과	충청남도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원안동의
116	공동체정책과	충청남도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	원안동의
117	공동체정책과	충청남도 속의민주주의 실현 조례	원안동의
118	공동체정책과	충청남도 공유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	원안동의
119	충남도립대학교	충남도립대학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선권고

참고 2

2022년 시책 인권영향평가 개선권고 내용

» 시책 인권영향평가 대상(3건)

년도	심의 건수	평가 대상	비고
2022	3	① 기업과 인권 체계 견인 및 지원 ② 이주배경아동에 대한 어린이집 차액보육료 지원 ③ 주민건강영향조사의 확대와 강화	시책 3건

» 시책 인권영향평가단 구성 비율

구분	계(명)	인권위원	인권 지킴이단	전문가	인권 활동가	당사자
2022	17	6	4	5	1	1

시책	개선권고(인권위원회)
기업과 인권 체계 견인 및 지원 (예산담당관/ 공공기관팀)	충청남도 도지사(예산담당관)에게, 1. 기관 개선사항 가. 기관별 특성에 맞는 인권영향평가 지표 마련 나. 인권영향평가지 구성원 및 이해관계자의 참여 다. 인권영향평가 후 인권 이슈 도출을 통한 기업 운영의 인권경영 가이드 마련 라. 인권정책 선언 주체를 최고경영자로 명시 마. 인권경영의 책임자를 최고경영자로 명시 바. 인권경영위원회 위원의 한쪽 성별의 60%를 넘지 않도록 균형에 맞게 구성 필요 사. 인권침해 피해자 보호체계 강화 아. 인권경영위원회의 독립성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한 노력 필요 자. 인권침해 구제 절차 조사 심의 후 제도 개선사항 관련 논의는 해당 기관의 인권경영위원회에서 진행 차. 기업의 인권 가치확산의 중요성에 대한 교육 실시 카. 인권전담부서 및 담당자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역량강화 교육 실시 타. 신규직원 교육 시 인권경영 전반에 관한 내용 포함 2. 도 개선사항 가. 충청남도 공공기관 인권영향평가 매뉴얼 제시 및 전문교육 실시 나. 매년 공공기관의 인권영향평가 보고 체계 마련 다. 대면 강의를 통한 공공기관 인권담당자의 역량 강화 교육 시행 라. 관내 공공기관의 인권 경영 우수사례 발표 및 워크숍 등 기업의 인권 경영 촉진을 위한 방안 모색 마. 기관별 인권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인권경영 확산을 위한 지원방안 마련 바. 공공기관 인권경영 4단계를 마치지 못한 기관의 추진계획 점검
이주배경 아동의 어린이집 차액보육료 지원 (출산보육정책과/ 보육지원팀)	충청남도 도지사(출산보육정책과)에게, 1. 교육청은 「충청남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개정을 통해 다문화 가정 유치원 유아 학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충청남도도 마찬가지로 「충청남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조례」개정으로 외국인 주민을 지원하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으므로 도 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 자녀가 차별받지 않고 실질적으로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어린이집 차액보육료를 지원할 것을 권고 2. 도 또는 시군이 이주배경 아동의 어린이집 차액 보육료를 지원할 경우 다음과 같은 사항을 함께 추진할 것을 권고

시책	개선권고(인권위원회)
	1) 정보접근권 가. 어린이집 차액보육료 지원 관련하여 보육종사자 및 이용자에게 다언어로 공유 나. 어린이집과 보육 종사자에게 어린이집 차액보육료 제도에 대한 안내 다. 보육종사자와 이주민 가정 부모의 원활한 언어소통 지원 2) 참여권 가. 어린이집 차액보육료 지원 시 지원방향 및 모니터링 실시 나. 이용자 만족도 조사 실시 3) 교육권 가. 보육종사자에게 이주민의 문화적 배경에 대한 이해교육 실시 4) 공평한 복지를 받을 권리 가. 어린이집 차액보육료 지원의 적절한 예산 편성 5) 노동권 가. 이주노동자 자녀의 보육지원을 위한 보육 교직원 인건비 계획 편성 마련 6) 평등권 가. 이주민 미등록 아동의 어린이집 입소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 마련
주민건강영향조사의 확대와 강화 (푸른하늘기획과/생활환경보건팀)	충청남도 도지사(푸른하늘기획과)에게, 1. 정보접근권 가. 주민건강영향조사 종료 후 전문 의료진의 조사 결과에 대한 답변 필요 나. 주민건강영향조사 종료 후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을 통해 조사결과를 홈페이지 등에 공개 필요 2. 건강권 가. 심리상담 서비스 지원 등 사후 조치에 대한 대책 수립 필요 3. 인권침해 구제절차 가. 인권침해 피해 구제절차 마련을 통해 조사대상자의 권리 보호 필요 4. 사회적 약자에 대한 편의 제공 가. 다양한 사회적 약자(청각장애인 등)를 고려한 편의제공(수어통역 QR코드 서비스 등) 필요 5. 중장기 계획 마련 가. 조사 결과에 대한 직·간접적인 조치 마련을 위한 예산 계획 마련 필요 나. 주민들의 건강피해의 인과관계 입증을 위해 지속적 조사계획 마련 필요

(제정) 2018-10-01 조례 제 4387호
(일부개정) 2020-04-01 조례 제 4679호 충청남도 조례용어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에 따른 일부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도민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 실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그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2. “도민”이란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에 주소를 가지거나 거주를 목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사람 및 도 소재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인권약자”란 소외되기 쉬운 사람이나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를 당한 집단의 구성원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도는 도민의 인권과 관련한 다른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와 부합되도록 해야 한다.

제4조(도지사의 책무)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민 인권선언의 정신과 가치 실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관련 시책을 발굴하여 이에 필요한 행정 및 재정상 조치를 취해야 한다.

- ② 도지사는 도민에 대한 인권침해와 차별이 발생한 때에는 당사자가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③ 도지사는 인권정책 수립에 있어 도민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제5조(도민의 권리 및 협력) ① 모든 도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니며, 기본적인 인권을 향유할 권리를 가진다.

- ② 모든 도민은 「대한민국헌법」과 「국가인권위원회법」 등 관계 법령에서 금지하는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 ③ 모든 도민은 다른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고 지역사회 인권증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 보호 및 증진사업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도지사는 도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5년마다 충청남도 인권정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② 기본계획에는 도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도민의 인권의식 향상을 위한 시책
3. 분야별 인권과제 추진목표 및 이행전략
4. 기본계획 실행에 필요한 자원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기초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인권정책 수립과 이행, 도민인권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하되 성별 분석을 고려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수립할 경우 공청회, 토론회 등을 통하여 도민의 의견수렴과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7조(인권증진시책토론회) ① 도지사는 기본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인권증진시책 토론회(이하 “시책토론회”)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책토론회는 도지사가 주관하며, 관계 부서 실·국장급 공무원과 충청남도 인권위원회 위원, 도민인권지킴이단, 관련 기관단체, 전문가 등이 참석한다.

③ 시책토론회는 기본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있어 인권행정 실현을 위해 관계 부서 간 협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 논의·조정한다.

④ 시책토론회는 연 2회 개최하고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추가 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8조(인권지수의 개발) ① 도지사는 도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과 국제인권규약 및 권고 사항에 대한 도 차원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인권지수를 연구·개발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개발한 인권지수를 도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 사업에 반영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9조(인권영향평가) ① 도지사는 자치법규 및 시책 등이 도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할 때에는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인권영향평가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례·규칙
2. 도민의 인권증진을 위해 충청남도 인권위원회에서 선정한 시책 등

제10조(인권교육) ① 도지사 또는 도가 출자·출연한 기관, 도의 사무위탁기관 또는 도의 지원을 받는 각종 복지시설의 장과 그 소속 공무원·직원은 매년 4시간 이상 인권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하며, 민간사업장 및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인권교육이 시행될 수 있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필요한 인권교육 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인권교육 교재개발 및 연구
 2. 인권교육 강사 양성·지원
 3. 그 밖에 인권교육을 위해 필요한 사항
- ③ 도지사는 제1항의 교육업무를 외부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해마다 그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공개해야 한다.

제11조(인권지킴이단의 구성·운영) ① 도지사는 도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 과정에 도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고 그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도민인권 지킴이단(이하 “인권지킴이단”이라 한다)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인권지킴이단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도에서 진행하는 소정의 인권교육을 수료한 도민, 인권약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되, 성별균형을 고려한다.

③ 인권지킴이단은 도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인권교육에 관한 의견 제시 및 참여활동
 2. 인권실태조사에 관한 의견 제시 및 참여활동
 3. 주요 인권정책에 관한 모니터링, 홍보와 지원활동
 4.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에 대한 제보
 5. 그 밖에 도지사가 도민의 인권증진을 위해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④ 도지사는 제3항의 임무를 수행한 인권지킴이단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인권보호 및 증진활동 지원 등) ① 도지사는 효율적인 인권보장 및 증진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정적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③ 도지사는 인권정책 추진, 인권문화 확산 등의 사업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해당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외부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3조(관계기관과의 협력) ① 도지사는 인권문화 확산을 위해 국내외 정부·지방정부 및 비정부기구와 교류 및 협력사업 등을 실시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교류 및 협력사업 등을 위해 관련 전문가 등에게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인권위원회

제14조(설치 등) ① 도지사는 도민인권 보호 및 증진시책의 효율적 심의·자문 등을 위하여 충청남도 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심의·자문
2. 기본계획의 연도별 시행계획에 관한 심의·자문
3. 도민의 인권에 영향을 미치는 제도, 정책, 관행에 대한 자문 및 개선권고
4. 인권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5. 인권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6. 그밖에 도지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5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어느 한쪽 성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이 경우 호선(互選)하는 회의는 당연직 위원이 주재한다.

③ 위원은 도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인권에 대한 식견과 경험을 충분히 갖춘 사람으로 위촉 또는 임명하며, 위촉직 중에 인권약자를 포함해야 하고, 인권업무를 총괄하는 실·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임명한다.

1. 공개모집을 통해 위촉된 도민
2. 인권분야 정부기관, 비영리 민간단체·법인, 국제기구 등에서 근무 경험이 있는 사람
3. 인권 관련 비영리 민간단체·법인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4. 인권 관련 교육, 법률 등 전문가
5. 충청남도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사람
6. 그 밖에 인권증진에 소양과 식견을 갖춘 사람
- ④ 위촉직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위촉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 ⑤ 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인권부서의 장이 된다.

제16조(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미리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연 4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 회의는 공개하며, 회의록을 작성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정보보호 등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는 회의 진행 및 회의록을 비공개로 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공청회 또는 세미나 등을 개최하거나 전문기관이나 단체 등에 필요한 조사·연구 등을 의뢰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출석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위원회에는 필요할 경우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소위원회 위원은 위원회 위원 중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위촉한다.

⑧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그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7조(독립성 및 신분보장) ① 위원은 위원회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

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하지 아니한다.

1.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2. 위원 스스로 사임을 희망하는 경우
3. 질병이나 국외체류 등으로 장기간 위원회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위원회 활동 취지에 반하는 행동, 다른 사람에 대한 인권침해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불성실한 출석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어 위원회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 경우

제18조(정책 등의 개선 권고) ① 도지사는 인권의 보호와 향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내용의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할 경우 인권위원회의 심의·자문을 받아야 한다.

② 인권위원회는 도의 제도, 정책, 관행 등이 도민의 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될 때에는 도지사에게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권고를 받은 경우 그 권고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장 인권센터

제19조(설치·운영) ① 도지사는 효율적인 도민 인권 보장 및 증진 정책을 시행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인권센터(이하 “인권센터”)를 둔다.

- ② 인권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권증진을 위한 법령·제도·정책·관행 등의 조사·연구 및 그 개선방안 연구
 2. 인권침해 및 차별관련 상담조사 및 권리구제
 3. 인권상황에 대한 실태조사 및 인권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4. 도민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해 활동하는 단체 및 개인과의 연대·협력
 5. 인권분야 정부기관·비영리 민간단체·법인과의 교류·협력
 6. 인권증진활동(상담사례 등)보고서 발간
 7. 그 밖에 도민의 인권보장과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③ 도지사는 인권센터의 업무를 직접 운영하거나 필요할 경우 비영리 법인에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20조(구성) ① 인권센터에는 센터장과 상담 및 조사, 연구 등을 담당하는 직원을 둔다.

② 인권센터의 장은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도지사가 선임한다.

③ 민간위탁으로 운영되는 경우에는 운영주체인 법인이 선임하되 다음 각 호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 한다.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 이상으로 근무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
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있었던 기간이 합산하여 5년 이상인 사람
3. 국가·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한 기간이 10년 이상이며 그 가운데 인권관련 분야에서 근무한 기간이 3년 이상인 사람
4. 인권, 성평등, 시민사회운동 등 관련 국제기구나 비영리 법인·민간단체에서 근무하는 등 활동경력이 7년 이상인 사람으로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제21조(직무의 독립성) ① 도지사는 인권센터의 운영 및 활동에 독립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인권센터의 장 등 임기제 공무원의 신분은 「지방공무원법」에 의하여 보장된다.
 ③ 인권센터의 장은 인권센터의 운영 및 업무를 총괄하고,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하여 수행하며,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④ 인권센터의 장은 그 직무를 수행하는데 지장이 없다고 도지사가 인정하여 승인하는 경우 외에는 다른 직을 겸임할 수 없다.

제22조(인권보호관 운영) ① 도지사는 도민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인권센터에 도민 인권보호관(이하 “인권보호관”이라 한다)을 둔다.
 ② 인권보호관은 11인 이내 합의제 형태로 운영하고, 센터장을 포함한 3인 이상 5인 이내의 상임 인권보호관과 6인 이내의 비상임 인권보호관으로 구성할 수 있다.
 ③ 상임 인권보호관은 임기제공무원으로 하고, 「지방공무원법」등 관계법령에 따라 임용한다.
 ④ 비상임 인권보호관은 제20조제3항을 준용하여 도지사가 위촉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 비상임 인권보호관의 해촉은 제17조제3항을 준용한다.

제23조(상담 및 조사) ① 인권센터의 장은 인권센터에 상담신청 등이 접수 되었거나 도지사 또는 위원회가 의뢰한 다음 각 호의 기관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인권침해 사항에 대해 조사하고 그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다만, 상임 인권보호관이 중대한 인권침해 등의 사안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직권으로 조사하여 그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1. 도 및 그 소속 행정기관
2. 도내 시·군(도의 위임사무에 한한다)
3. 도가 출자 또는 출연하여 설립한 기관
4. 도의 사무위탁기관(도의 위탁사무에 한한다)
5. 도의 지원을 받는 각종 단체와 시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인권센터장이 조사를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무로 하지 않을 수 있다.

1. 인권침해를 당한 사람 이외의 제3자가 한 조사신청에 대하여 본인이 조사를 원하지 않는 것이 명백한 경우
 2. 조사신청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법원의 재판,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그 밖의 법령에 따른 권리구제 절차나 조정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경우
 3. 그 밖에 조사신청이 현저하게 이유가 없거나 허위의 사실에 의거하고 있거나 인권 보호 이외의 다른 목적을 위하여 이루어졌음이 명백한 경우
- ③ 인권센터의 장은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제1항 각 호의 기관에 대한 현장 조사·문서열람·시료채취 등을 하거나 조사대상자에게 보고·자료제출 및 출석·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 ④ 인권센터의 장은 직무에 속하는 사항에 대한 조사를 진행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비영리 민간단체·법인 임직원, 전문가 등을 조사인력으로 참여시킬 수 있다.
- ⑤ 인권센터의 장은 인권 관련 도 정책의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위원회에 출석하여 건의할 수 있다.

제24조(시정권고 및 후속조치) ① 인권센터의 장은 인권침해가 있었다고 판단한 경우 도 지사에게 그 시정을 권고할 수 있으며, 인권침해 결정은 인권보호관 재적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인권센터의 장은 의결내용을 지체없이 도지사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며, 도지사는 위 결과를 신청인 및 피신청인, 조사기관의 장 등 관련 당사자들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시정권고 통지를 받은 조사대상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내용을 존중하여 조치하여야 하며, 통지받은 날로부터 2월 이내에 시정권고에 대한 조치결과를 도 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5조(지원) 도지사는 인권센터와 인권보호관의 효율적인 직무수행을 위하여 조사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비상임 보호관 및 조사에 참여한 외부전문가의 수당 등 제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장 보칙

제26조(표창) 도지사는 도민인권 보호 및 증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인권활동가, 인권 관련 기관·단체, 관계공무원 등에 대하여는 표창할 수 있다.

제27조(비밀엄수) 도민인권 보호 및 증진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 중인 사람은 그 직무 수행 과정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28조(준용) 도민인권 보호 및 증진사업의 보조금 신청·교부·정산, 표창 등에 필요한 사항은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충청남도 포상 조례」 등에 따른다.

제2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촉 또는 임명된 인권위원회, 인권센터, 인권지킴이단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 또는 임명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전 문

우리는 인간에게 존엄함과 동등한 권리가 있음을 인식하고, 충남지역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인류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자유롭고 평등하며, 행복하게 살아갈 권리가 있음을 선언한다.

불의와 억압에 저항하며 인간의 존엄을 지키려 했던 선조들의 의병운동과 동학농민혁명의 정신을 이어받고, 민족의 자주독립에 헌신했던 우리 지역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계승 발전 시킴으로써, 인류애와 정의의 가치가 실현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우리 지역에 사는 모든 사람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권리들을 누릴 수 있도록 제도와 문화를 개선하고, 인간 존엄의 가치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이를 위해 국적, 인종, 성, 연령, 장애, 경제적 사회적 지위 등에 의한 그 어떠한 차별도 단호히 거부한다. 특히 사회적 약자, 소수자 존중은 관용과 연대의 우리 공동체를 실현하는데 필수불가결한 요소임을 천명한다.

날로 심각해져 가는 지역의 생태와 환경의 위기를 극복하고, 삶의 안전을 위협하는 각종 위험 요소들을 제거해 나감은 물론, 인도주의 정신과 인권적 가치에 바탕을 둔 올바른 교육 환경과 풍토를 만들어 나갈 것이다. 자유로운 예술창작과 문화 활동을 보장하여 주민의 삶이 날로 풍요로워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다.

인권이 꽃피어 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하여, 도민의 민주적 참여와 대화를 통해 ‘충남 도민 인권선언문’을 선포한다. 이는 인간의 보편적 권리를 가꾸고 지키려는 지역적 노력의 차원을 넘어, 전 인류를 향한 지역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의무와 연대를 실천하고자 하는 충남도민의 고귀한 약속을 담고 있다.

우리 모두의 지혜와 역량과 의지를 모아, 충청남도의 모든 주민들이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길로 힘차게 나아가자.

제1장 인권보장의 기본원칙

제1조 차별금지의 원칙

- ① 충남도민은 성별, 나이, 외모, 장애, 인종, 종교, 병력(病歷), 사상, 신념, 출신 및 거주지역, 결혼여부, 가족구성, 학력, 재산,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국적, 전과(前科), 임신, 출산 등 어떤 이유로도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 ② 충청남도는 모든 차별행위를 없애기 위해 노력하고 도민의 인권을 보장한다.

제2조 민주적 참여의 원칙

- ① 충남도민은 충청남도의 주인으로서 행정정보에 대해 알 권리를 가지며, 충청남도에 대해 설명을 요구하고,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 ② 충청남도는 정보공개를 충실하게 하고, 충청남도의 정책결정과정, 예산편성 과정에 도민의 참여를 보장할 책무가 있다.

제2장 인간답게 살 권리

제3조 주민생활기본선의 보장

- ① 충남도민은 헌법에 따라 인간답게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충청남도는 이를 보장하여야 하며 이의 완전한 실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해야 한다.
- ② 충청남도는 복지, 교육, 문화, 환경 등 제반 분야에서 주민생활의 기본선을 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정책을 수립하고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

제4조 주거에 관한 권리

- ① 충남도민은 건강하고, 안전하며, 안정적이고 쾌적한 주거에서 생활할 권리가 있다.
- ② 충청남도는 도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지킬 수 있는 안전하고 건강한 주거를 보장할 책무가 있다.

제5조 교육에 관한 권리

- ① 충남도민은 교육에 적합한 시설과 환경에서 생애주기별로 적절한 교육을 받고 학습할 권리가 있다.
- ② 충청남도는 학교교육뿐만 아니라 직업교육과 평생교육을 위한 적합한 공간과 시설, 서비스를 충분히 제공하여야 하며, 인권 문화 조성을 위한 인권교육, 평화 교육 등을 적극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 건강에 관한 권리

- ① 충남도민은 건강을 누리고, 안전한 먹거리를 먹으며, 질병예방을 위한 교육과 질병에 대한 적절한 치료를 받을 권리가 있다.
- ② 충청남도는 도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공중위생과 공공보건의료 서비스 향상에 최선을 다하며, 경제적 이유 또는 정보 부재의 이유로 주민의 건강권이 침해 받지 않도록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책무가 있다.

제7조 문화에 관한 권리

- ① 충남도민은 다양성이 보장되고 지역의 특성을 살린 문화를 누릴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 ② 충청남도는 도민의 문화 향유권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과 시설을 마련하고, 문화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지원할 책무가 있다.

제3장 안전하게 살 권리

제8조 안전에 관한 권리

- ① 충남도민은 모든 형태의 범죄와 폭력, 재해, 재난 기타 위험요소로부터 안전하게 생활할 권리가 있다.
- ② 충청남도는 도민들이 차별 없이 모든 위험 요소로부터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정책을 마련할 책무가 있다.

제9조 환경에 관한 권리

- ① 충남도민은 오염되지 않고 건강한 환경을 누릴 권리가 있다.
- ② 충청남도는 자연환경을 보존하고 오염원을 철저히 관리하여,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고 도민들이 쾌적하고 건강한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할 책무가 있다.

제10조 이동권 및 접근권

- ① 충남도민은 자기 의사에 따라 이동하고 공공이 왕래하는 모든 시설이나 행사에 그 사람의 장애나 신체의 불편 여부와 상관없이 접근하여 이용할 권리가 있다.
- ② 충청남도는 이동 및 접근에 불편을 겪고 있는 주민들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지원할 책무가 있다.

제4장 일과 권리

제11조 노동에 관한 권리

- ① 충청도민은 차별 없이 공정하고 안전한 작업환경에서 노동할 권리와 실업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 ② 충청남도는 도민의 고용안정과 적절한 임금 보장, 노동조건 개선의 책임을 진다. 특히 비정규직 노동자, 특수고용 노동자, 여성 및 이주 노동자, 장애인 노동자, 청소년 노동자, 고령 노동자 등 노동 약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 할 책무가 있다.

제12조 농어민의 권리

- ① 충청남도의 농어민은 기본적인 소득을 보장받으며 지속가능하고 안전하게 농어업을 할 권리가 있다.
- ② 충청남도는 농어민의 소득을 보장하고 안전하고 건강하게 농어업을 할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하고 지원할 책무가 있다.

제5장 약자 및 소수자의 권리

제13조 어린이, 청소년

- ① 충청남도의 어린이, 청소년은 건강하고 안전하며 차별 없이 성장할 권리를 갖는다.
- ② 충청남도는 어린이, 청소년이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공적 서비스를 제공 하여야 하고, 교육받을 권리, 쉼 권리, 문화, 복지를 향유할 권리를 보장하며 도정에 참여할 기회를 마련할 책무를 갖는다.

제14조 여성

- ① 충청남도의 여성은 나이, 외모, 결혼여부 및 출산, 장애 등을 이유로 차별 받지 않고 모든 영역에서 자유롭게 평등할 권리를 갖는다.
- ② 충청남도는 여성이 가정, 직장, 일상에서의 성폭력을 포함한 모든 폭력으로 부터 자유로울 수 있도록 정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여성이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책무를 갖는다.

제15조 장애인

- ① 충청남도의 장애인은 인간답게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자신과 관련된 모든 정책 및

프로그램의 의사결정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권리를 보장 받는다.

② 충청남도는 장애인의 장애유형과 일상생활에 맞는 공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자립 가능한 환경조성에 최선을 다할 책무를 갖는다.

제16조 노인

① 충청남도의 노인은 빈곤과 외로움으로부터 자유롭게 노후를 살아갈 권리를 갖는다.

② 충청남도는 노인이 존엄을 지키며 건강하고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와 지원을 할 책무를 갖는다.

제17조 이주민

① 충청남도의 이주민은 국적에 관계없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② 충청남도는 이주민이 인종, 국적, 성별, 언어, 종교, 체류 자격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으며, 자신의 문화와 정체성을 지킬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책무를 갖는다.

제18조 북한이탈주민

① 충청남도에 사는 북한이탈주민은 차별 없이 인간답게 생활할 권리를 갖는다.

② 충청남도는 북한을 떠나 국내에 살고자 하는 사람이 주거, 교육, 직업 등 차별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제19조 그 외 소수자

충청남도는 앞에 나온 사회적 소수자뿐만 아니라 드러나지 않거나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소수자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책무를 갖는다.

제20조 그 외의 권리

이 선언에서 명시된 권리 외에 도민이 가지는 권리는 모두 동등한 가치로 존중되어야 하며, 이 선언에서 명시되지 않음을 이유로 경시되어서는 안 된다.

제6장 인권선언의 이행

제21조 이행체계의 마련

① 충청남도는 이 선언문을 실행하기 위해 필요한 조례 및 전담부서를 설치하는 등 제도를 정비하고 정책을 수립 집행하여야 한다.

- ② 충청남도는 인권실태를 주기적으로 조사하여 그 결과를 도민들에게 공표하여야 한다.
- ③ 충청남도는 인권증진을 위한 기본계획과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④ 충청남도는 의회, 교육청, 국가인권위원회, 시민사회와 협력체계를 갖추고 인권교육 실시, 인권문화 확산 등을 위한 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⑤ 충청남도는 국내외의 지방자치단체, 국제인권기구 등과 교류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 ⑥ 충남 지역 주민은 스스로 인권을 배우고 실천함으로써 인권공동체 구현의 주체로서 역량증진을 위해 노력한다.



2023 충청남도 인권영향평가 보고서

발행일 2023년 12월
발행처 충청남도
편 집 충청남도 인권센터(041-635-2339)
인 쇄 선우(주) 041-632-2363

